연구보고 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저 자 **성윤숙**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범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초기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현재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에 있어서 지향하거나 지양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향후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하고, 국내외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은 물론,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황 파악과 초·중등 교원 및 전담 조사관 등 해당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성과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업무경감이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에서 종결까지, 대응절차 전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호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합목적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 내용 및 절차
- 국내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진단

-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 운영 유형(안)
-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운영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주체들 의견수렴,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현행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성과와 한계 및 보완점 도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사례조사, 전문가 워킹그룹 워크숍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의 합목적성

- 교사의 업무경감 효과에 대하여,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나, 다수의 입장은 업무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사안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수의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학부모 민원과 관련하여, 제도의 시행 이후 학부모 민원의 상대적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지속적 시행

- 제도의 지속적 시행에 반대하는 견해는 없었음. 초기의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현재는 제도의 보완을 통한 지속적 추진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효율성과 합목적성의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학교의 경우, 지속적 시행에 찬성하되, 학교의 자율과 책임 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의 유연성을 제안함
- 초·중등교원의 경우, 지속적 시행에 찬성하되, 단기적으로 교원의 학생 지도권 범위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시 역할의 명확한 규정, 장기적으로 교권의 바른 회복에 기초한 교사의 학생 지도 및 갈등 중재와 조절 그리고 화합의 역할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경우, 지속적 시행에 찬성하되, 직급 보장 및 생산적·합리적 사안 처리를 위한 정밀하고 일원화된 매뉴얼의 필요성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보완점

- 단기적으론 정밀하고 구체적인, 통일된 매뉴얼 제작,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이나 악성 민원, 동석이나 일정 조율 등 구체적 절차상 진행 과정상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담당 교사 및 전담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의 필요성이, 장기적으론 바른 교권과 학생 학습권의 공정한 회복 및 동반 정립 추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 주체들의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의 근본적 원인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예방 교육과 인성, 사회성 교육 강화가 요구됨

핵심 정책제언

● 단기적 제언

●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개별 시행 주체별(학교, 교사, 책임교사, 전담 조사관 학부모 등) 정밀하고 구체적인, 특히 상황별 대처요령을 포함하며, 모든 시행 주체가 참여, 협의, 합의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적용 가능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운영 유형(안) 및 장·단점 제시

유형 1: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폭력 피해가해 학생 측이 모두 요구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
유형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폭력 피해가해 학생측 중에서 어느 한쪽에서 희망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양측 중 어느 한쪽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
유형 3:	학교 측에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전담 기구에서 할지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의뢰할지 결정
유형 4:	모든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
유형 5:	모든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조사
유형 6:	폭력(경찰 수사 시 제외),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 발생한 폭력 중 양측 학생과 학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시
유형 7:	전담조사관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고용의 안정성 확보

- 현재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는 급여체계의 공정성과 유연성에 입각한 합리적 전환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법적 보호방안 마련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신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 필요

핵심 정책제언

- 전담조사관이 조사 과정 등으로 인권침해나 법적 피소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법적 조력(변호사 지원 등)

● 장기적 제언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적 전환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정착 및 전담 조사관의 고용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학교 내 사안 발생 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혼란을 최소화함은 물론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비정기적 봉사직을 갈등 조정, 가·피해 학생 상담, 사안 파악, 조사 등 학교폭력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총괄 책임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가칭 '학교폭력전담 실무사'),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인원을 정하며, 근무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자격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현재 퇴직자 중심의 조사관들이 경험과 역량이 전문화될 즈음 고령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됨. 따라서 조사자 자격을 현재 교육대 또는 사범대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의 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원이 아닌 자(교사 준비 자, 퇴직 2년 이내인 자 등), 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확대할 것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한 공가 공인 민간 자격증화(예: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증)"를 제안함

● 학교폭력 대응 다원화

- 학교폭력에 대한 단일화된 접근을 지양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제도 시행의 유연성에 입각하여 제도를 ① 교사 자체 해결, ② 학교장 종결, ③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④ 경찰조사의 네 단계로 세분화하고, 전담 조사관은 세 번째 경우에만 투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함

핵심 정책제언

- 적용 대상을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이상의 두 시기로 구분하고, 초등 저학년의 경우, 성폭력이나 심각한 사안을 제외하곤 교사와 학교장 종결의 두 영역하에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접수 및 전담조사관 투입은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고, 초등 고학년 이상의 경우에만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전담조사관을 투입할 것을 제안함

● 학생 인권 중심에서 상호권리 존중과 책임 이행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구조는 물론 현재의 일방적 학생 인권 중심 교육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사의 바른 지도권 회복과 학생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 교육 주체들의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교사의 자율적 지도권과 책임은 물론, 학생의 인권과 의무를 동시에 명시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함

●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의 근본적 원인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강화, 매년 학기 초, 학교폭력의 정확한 규정 및 예방과 대응에 관한 강의를 SPO나 책임교사 또는 학교 전담조사관 및 관련 전문가의 주관하에 개설할 것을 제안함

●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인간관계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과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및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 강화를 제안함

차 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24-수시0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 6

Ⅱ. 국내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 ····· 11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내용 및 절차 ····· 12
3. 국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 15
4. 국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16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진단: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안

1.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 비교 분석 ····· 21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간담회 분석 ····· 29
3. 초·중등 교원 의견 수렴 및 시사점 도출 ····· 34
4.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및 시사점 ····· 37
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의견 수렴 및 시사점 ····· 68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105
2. 정책 제언 ····· 109

참고문헌 ····· 135

표 목차

표 Ⅲ-1.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분석틀 ····· 22
표 Ⅲ-2.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유형별 분류 결과 ····· 24
표 Ⅳ-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예시 개선안 ····· 121
표 Ⅳ-2. 정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220520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표 Ⅳ-3. 인성교육의 세 영역 ····· 131

그림 목차

그림 Ⅱ-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흐름도 ····· 13
그림 Ⅱ-2.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 14
그림 Ⅳ-1. 교육공동체 모형 ····· 129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4년 3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전국 초·중·고에서 일제히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및 지원,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등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였다. 현재 본 제도는 점진적으로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나, 제도 추진 과정에서 조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 또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처우나 전담조사관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 교원의 경우, 업무경감에 대한 실질적 체감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고, 이외에도 학교폭력 대응 책임의 모호성이나 피해 학생 추가 피해 및 보호에 대한 우려 등 보완이나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초기, 현장 교사들의 부정적 반응도 존재하였다. 일례로 〈좋은교사운동〉은 5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5월 3일~ 20일까지 초·중·고 교사 1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대해 27%만이 긍정 평가한 반면, 부정 평가는 46%에 달했다. 또 학교폭력 업무 부담 완화 정도의 경우 긍정평가는 20%인 반면 부정 평가는 61%로 집계되었다(좋은교사운동 보도자료, 2024.05.29.).

교사와 학생, 학부모, 현장 학교 등 관련 주체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입 초기, 당사자들의 공감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과 같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 7개국엔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윤근혁, 2024.04.23.).

비록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상호 협의에 기초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등의 노력이 있어지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선 전담조사관

제도가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고, 시·도교육청별 또는 학교별로 제도의 실질적 시행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부실화되지 않고, 도입 취지에 보합하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의 합목적적, 생산적 제도로 안정적 정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파악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둘째, 담당 교사와 전담 조사관 등 제도 시행 관련 주체들의 포괄적 의견수렴과 분석 그리고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상황 파악 및 의견 분석을 기초로 현재 상태에서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제도의 실제적 성과나 의미 등 긍정적 측면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정적 요소 나아가 불확실성의 요소까지 진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산, 강화되어야 할 부분과 개선 또는 수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실효적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초기 시행 현황 파악과 제도 시행 주체들의 의견 분석을 기초로, 현재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에 대해, 지향 및 지양되어야 할 양면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향후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하고 국내 및 국외의 유사 사례를 분석한 후,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성과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업무 경감, 학교 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호방안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합목적적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1) 국내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고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고찰 및 국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진단

(1)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비교·분석

2024년 07월 16일에 교육부 및 17개시·도교육청에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제출' 협조 공문을 보내 2024년 08월 08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계획」을 공문이나 메일로 전달받아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분류 기준은 첫째, 해당 제도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둘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별 유목화 가능정도를 바탕으로 분류 기준을 최종 선정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분류 배경은 아래 4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1. 학교의 사안조사 업무 경감: 조사관 자격
2. 사안조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사안조사의 권한(조사관 단독/외부 기관 협력, 학교 전담기구 자체조사 가능 여부)
3. 사안조사 내용의 검토 및 전달성: 사례회의에 전담조사관 필수 참석(여/부)
4. 조사관 처우: 조사관 1건당 수당(최저 20만 초과/이내), 1인당 월별 건수(월 2~3건 이내/3건 초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분석틀은 4개의 상위 상목으로 운영기준, 조사관 역할, 역량강화, 협력방안으로 구성하고 각 상위항목에 따른 세부항목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주체들 의견수렴,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4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24년 12월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의 초·중등 교원과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전담 조사

관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정착 여부와 지속적 시행 여부, 제도의 지속 시 개선할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성과와 한계 및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교사의 업무 경감, 학교 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호방안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합목적적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추진 배경 및 절차, 국내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유사 사례 등 선행연구 고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을 분석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초기('24년 6월 25일) 개최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간담회',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주최 유튜브 방송(https://www.youtube.com/watch?v=40dmGS-gMk4)을 녹취한 자료를 2차 자료로 분석 활용하였다. 국회, 교육부, 교육청, 현장 교원, 전담조사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성과 및 한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3) 사례조사

국내 및 국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비교·분석을 통한

운영 유형(안) 도출 및 우수사례 탐색하였고, 각 유형별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강·약점 탐색하였다.

4) 전문가 워킹그룹 자문·워크숍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국내 관련분야 55명의 전문가 워킹그룹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17명,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명, 초·중등 책임교사 10명, 학계·교장·행정계 등 전문가 8명)을 구성하였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1, 2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하였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분석틀 작성 및 비교·분석, 유형(안) 분류, 초·중등교원, 17개 시·도교육청, 전담조사관 의견수렴을 위한 서면 자문의견서 3종, 정책 제언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8회 개최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12월 14일에 초등 교원 6명, 중등교원 5명 전문가 워킹그룹 워크숍 개최하였다. 12월 1~3주에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실태 및 전담조사관의 법적 보호방안 탐색을 위해 12월 2~3주에 20명의 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 국내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내용 및 절차
3. 국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4. 국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 국내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

범정부 차원의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기 보급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폭력 유형이 다각화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 왔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12.07.).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 학생에게는 책임을 부여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하였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6일에는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외부 이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12.07.). 그 결과 12월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12.07.). 구체적으로, 이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피·가해 학생 지도, 피해 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내용 및 절차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내용

2023년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핵심 내용(교육부 보도자료, 2023. 12. 07)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 여기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 및 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전담조사관의 자격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으로 한정된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조사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대략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사안 조사와 함께 관련 교사,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면담
2. 학교장(전담 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조사 결과 보고
3. 법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제1호에 따른 조사 자문 요청
4. 그밖에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둘째, 학교폭력 사례 회의 신설을 통한 조사관의 사안 조사 검토·보완,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검토 및 보완하며 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사례 회의가 신설된다. 학교폭력 사례 회의는 2023년 4월 12일 이루어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된다. 운영은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학교전담 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하며, 목적은 조사 결과의 완결성과 객관성 제고, 그리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한 체계화 및 사례화다.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절차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 절차는 [그림Ⅱ-1]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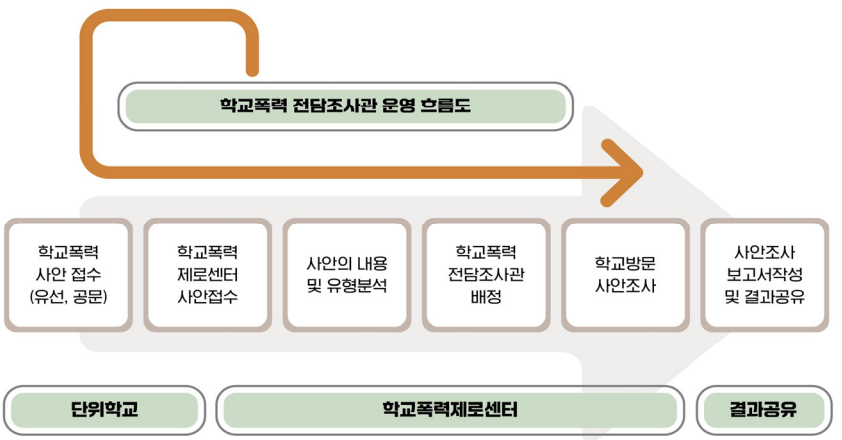

그림 Ⅱ-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흐름도

첫째, 학교 폭력 사안 접수 둘째, 학교 폭력 제로센터 사안 접수 셋째, 사안의 내용 및 유형 분석 넷째, 전담조사관 배정 다섯째, 조사관의 사안 조사, 조사관은 배정된 학교와 일정 조정 후 관련 학생 면담 및 자료 검토를 기초로 사안 조사 여섯째, 면담 및 자료 검토를 통해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이다. 보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별 조치사항은 [그림Ⅱ-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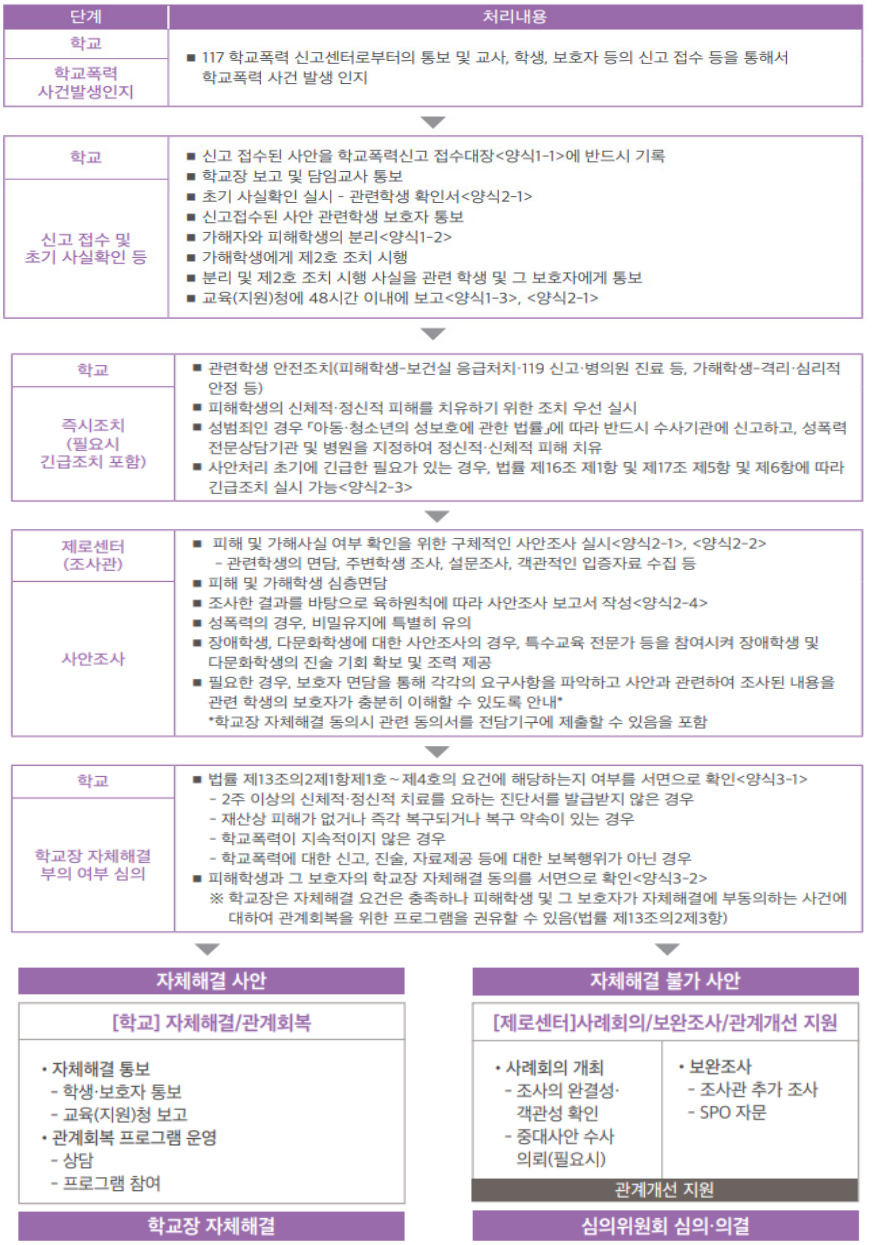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38~39.

그림 II-2.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은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결정하게 된다. 즉, 조사관의 보고서 검토 후,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게 되며,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사안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학폭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지면 14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를 내려야 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나 미이행시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조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국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김주한(2018)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현장 교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할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신성자(2014)는 〈교사의 학교폭력 개입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개입할수록 학생은 그러한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며, 교사에 대한 신뢰감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교사의 적극적 개입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승미·최승원(2021)은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에서 교사와 심의위원회, SPO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입장이 공정성과 객관성의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교육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직접적 연구로는 김주한(2024)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있다. 여기서 그는 현장 근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둘째, 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조사관의 법적 권한 부여와 처우개선이 요구된다는 것 그리고 넷째, 사안별 조사 과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 즉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 또는 청소년 전문가 출신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이충민·김대권(2024)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고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본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업무의 부수적 증가만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들로 언급된 것은. 조사관 역량 부족, 사안 조사 시의 부수적 업무 발생, 시범운영 없는 시행(신상운, 2024), 조사관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을 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는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요건 확대, 조사관의 지위 보장 및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조사관 연수 강화, 사안 조사 절차 시 조사관 역할 확대, 교육청 및 교육 지원 센터 행정업무 지원, 법령 정비를 통한 조사관 관련 근거 조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은 한성준(2024)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담 조사관의 파견 및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전담 조사관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을 때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주장(김태훈, 2024), 조사 방식 관련해서 대면 조사의 부담을 느끼는 학생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조사를 신속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메타버스를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윤진영, 김상욱, 2023).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연구도 있다. 강남수(2023)는 학교폭력 수사의 경우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복잡하고 중요성이 높으며, 특히 수사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김봉수·추봉조(2017)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에서 스쿨폴리스 제도의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강조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아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의 폐지나 특정 사안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정우, 2024).

4. 국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김상곤 외(2013)는 해외 주요 4개국, 즉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분석 연구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모두 학교폭력 대응방안에 있어, 국가의 책무,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일관성, 핵심 목적으로서의 예방, 정책 서비스 대상의 포괄성 및 서비스의 다차원적 총체성 그리고 서비스 주체의 다양성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해서 연구는 해당 국가들의 경우 전문적인 제3의 전담조사관이 아닌 각 학교장이나 교원 중심임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교장에게만 온전히 집중된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주로 지명 안전 담당자(Designated Safeguarding Lead, DSL)가 담당하는데, 교장, 교감 등이 맡는다.

따라서 폭력 문제의 발생 시, 학교 내부적으로 불만 처리 절차를 진행하며, 학교 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지역교육청,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교육기준청 OFSTED(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조사 주체는 한국과 같은 학교폭력 조사관이 아니라 해당 학교 교원이며, 담당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프랑스나 덴마크, 일본 등도 마찬가지이다. 선진 각국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기획기사 2024년 4월호(김해련 외, 2024)가 제시한 내용과도 다르지 않다. 중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 모두에 현재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은 제도는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주로 해당 학교장과 교원이 사안 조사의 중심에 있다. 캐나다의 경우 각 학교에 학교 기본 안전 코디네이터(Primary Safe School Coordinator)를 두는데, 역시 주로 학교장이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제도는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학교에 무장한 학교보안관을 두는 학교자원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각 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해당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청이 판단하여 주체적으로 선택, 실행한다. 따라서 연방 정부 차원의, 한국과 유사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나 학교 폭력 책임 교사제는 없다. 흥미로운 사례는 뉴저지 주의 2011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 이하 ABR)'경우이다(Cerf et al., 2011). 주는 이 법에 근거하여 각 학교의 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방지 전문가(Anti-Bullying Specialist, 이하 ABS)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S는 학교 직원 중 반폭력 전문가 교육을 받은 직원이 주로 담당하며, 학교폭력 예방부터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중에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도 있다. ABS는 학생, 교직원, 부모가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제반 자료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경중을 평가하고 정보 수집 및 학교 정책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결정한다. 실제적으로 타 선진국들처럼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이전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와 유사하나, 역할이 포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ABS는 학교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감독은

물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상담과 지원, 그리고 교사, 교직원 및 관리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인식 및 개입에 대한 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학교폭력 사건의 문서화 및 학교폭력예방법(ABR)의 지침에 따른 보고서의 주 정부 제출에 관여한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ABS의 업무 중 사안 조사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화한, 사실상, 선진국 중 한국만의 고유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중 다수 국가가 대부분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대응의 중심이 학교라는 점,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바로 경찰로 이첩한다는 점, 또 사안 조사의 주체도 한국과 같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아니라, 해당 학교 교원을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로 두고 담당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이러한 동향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할 지는 한국의 현재 교육 실정은 물론, 학교 교원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진단: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안

1.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 비교 분석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간담회 분석
3. 초·중등 교원 의견 수렴 및 시사점 도출
4.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및 시사점
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의견 수렴 및 시사점

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진단: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안

1.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 비교 분석

1) 분석 자료

2024년 07월 16일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제출' 협조 공문을 보내 2024년 08월 08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을 공문이나 메일로 전달받아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분석 방법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해당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목적 등 제도 관련 내용을 고려하였으며, 둘째, 17개 시·도교육청별 운영계획 내용 유목화 가능 정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분류 기준(분석틀)을 최종 선정하였다.

관련 내용 (교육부: 제도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VIP-현장교원 대화('23.10.6.)에서 교원들이 "학교 밖 학교폭력을 교원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추진목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으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 수용성 제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시 학교의 역할은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및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회복에 더 집중'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분석틀은 4개의 상위항목으로 운영기준, 조사관 역할, 역량강화, 협력방안으로 구성하고 각 상위항목에 따른 세부항목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아래 [표 Ⅲ-1]와 같다.

표 Ⅲ-1.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분석틀

연번	상위항목	세부항목
1	운영기준	사업기간
		운영기관
		전담조사관 운영예산
		전담인력
		구성 및 자격
		배제 및 해촉요건
		임기
		재위촉
		고용형태
		규모
		조사건수
		수당(건당)
		수당 세부 기준
		수당 이외 지급
		배정
		조사 방법
		업무수행 장소
2	조사관 역할	사안조사 정의 및 내용
		보고서 작성
		사안조사 시 학교의 역할
		자체해결 여부 심의
		사례회의
		사례회의 대상
		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회복 지원 운영
		피·가해학생 관계조정 지원단 운영
		피해학생 법률지원
		기타
3	역량강화	방식
		(1) 교육부
		(2) 시도교육청
		(3) 교육지원청
		컨설팅 내용
		연수내용
		참여여부
		모집 및 방법
4	협력방안	1) 교육청
		2) 교육지원청
		3) 단위학교
		운영지원(위탁)
		커뮤니티

분석틀을 토대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계획 내용 현황을 분석하였고, 시·도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 차이 비교를 위해 분석 결과를 다시 아래 4가지 기준에 따라 재분류 및 분석하였다.

1. 학교의 사안조사 업무 경감: 조사관 자격
2. 사안조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사안조사의 권한(조사관 단독/외부 기관 협력, 학교 전담기구 자체조사 가능 여부)
3. 사안조사 내용의 검토 및 전달성: 사례회의에 전담조사관 필수 참석(여/부)
4. 조사관 처우: 조사관 1건당 수당(최저 20만 초과/이내), 1인당 월별 건수(월 2~3건 이내/3건 초과)

3) 분석 결과

(1)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 비교 결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계획 내용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분류 배경 4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Ⅲ-2]과 같다.

(2) 한계점

- 운영 유형(안)에 대한 전문가 4인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 분류 또는 분석에 활용된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계획(안)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후 연구 과정 중에 시도별로 수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시·도별 운영 내용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Ⅲ-2.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유형별 분류 결과

분류 배경	해당 항목	교육부 운영계획	분류 기준	분류 지역	17개 시·도교육청별 해당 내용
학교의 사안조사 업무 경감	전담 조사관 자격 기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임명 또는 위촉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1.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자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현직 교원 제외	F 시·도 H 시·도 Q 시·도 E 시·도 J 시·도 C 시·도 G 시·도 O 시·도 K 시·도 D 시·도 B 시·도 A 시·도	• 교육부 기준과 동일하게 제시함
			현직 교원 포함	N 시·도	•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
				Ⅰ 시·도	•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갈등조정 전문가 포함) 등 •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1. 교원으로 재직 또는 재직했던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자.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학교폭력원스톱현장지원단 교

분류 배경	해당 항목	교육부 운영계획	분류 기준	분류 지역	17개 시·도교육청별 해당 내용
					원은 공모 절차 없이 조사관으로 위촉 가능
				M 시·도	• 퇴직경찰, 퇴직교원, 변호사, 법무사, 학교폭력 유경험자(기간제교원, 현직교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등)
				L 시·도	1. 퇴(현)직 교원으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현직 교원은 학교장 추천 필요함. 2.퇴직 경찰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4.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P 시·도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화해중재단 중재위원 포함) 등
사안 조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사안 조사에 대한 권한	학교폭력 발생시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 학교폭력 발생 및 인지(교내 신고, 설문조사, 117,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서 신고 등)에 따라 조사관 배정	사안조사에 대한 권한 전면 전담조사관 소관	N 시·도	• 교육부 기준과 동일하게 제시함
				F 시·도	
				H 시·도	
				Q 시·도	
				M 시·도	
				E 시·도	
				B 시·도	
				P 시·도	
				G 시·도	
				O 시·도	
				C 시·도	
				L 시·도	
				D 시·도	
				A 시·도	
			사안조사에 대한 부분 권한 (외부기관 동행 여부 또는 학교	J 시·도	•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전담조사관을 배정하여 사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가 자체

분류 배경	해당 항목	교육부 운영계획	분류 기준	분류 지역	17개 시·도교육청별 해당 내용
			전담기구 자체조사 가능 여부)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정된 업무담당자가 학교폭력 사안 유선 접수, 접수된 사안 내용 파악 후 전담 조사관 배정, 조사관은 신속히 배정된 학교 및 그 밖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관련 학생측 면담 등을 통한 사안조사 • 조사관이 학교 방문 시 갈등전환 지원단이 협력하여 사안조사 가능
				K 시·도	• *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동행 가능 • * 모든 사안에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종전대로 전담기구 등을 활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조사를 할 수 있음. 단, 1)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 조사관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2)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 조사관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안의 경중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 협의 후 조사관 배정 가능
사안조사 내용의 검토 및 전달성	사례회의 참석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축적된 사안조사 내용의 체계·사례화 *사례회의 구성: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장학사, 전담조사관, SPO, 외부 전문가 등	참석	M 시·도	• 교육부 기준과 동일하게 제시함
				J 시·도	
				O 시·도	
				L 시·도	
				P 시·도	
				F 시·도	
			필요시 참석	N 시·도	• 전담조사관 조사 결과를 검토 및 보완, 자체해결 불가 사안의 경우 운영, 필요 시 참석 및 결과 보고
				H 시·도	• 요청 시 참석하여 학교폭력 조사 결과 논의 및 보고
				Q 시·도	• 전담 조사관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축적된 사안조사 내용의 체계·사례화. 필요 시 참석 및 추가조사
				E 시·도	• 사례회의 구성: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전담 조

분류 배경	해당 항목	교육부 운영계획	분류 기준	분류 지역	17개 시·도교육청별 해당 내용
					사관, SPO, 외부 전문가 등 교육지원청 내 협의 후 구성
				B 시·도	• 학교폭력제로센터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
				G 시·도	• 사례회의: 필요시 참여
				C 시·도	• 지급기준 예시: 사례회의 참석(필요시, 6만원)
				K 시·도	• 사례회의 구성: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SPO, 외부전문가 등 • 조사관의 역할: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교육지원청에 결과 통보, 사례회의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필요시) 등
				D 시·도	• 조사관의 역할: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시 학교폭력 조사결과 보고-서면 보고(필요시 참석 후 서면 및 구두 보고)
			보류	A 시·도	• *추후 법적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 예정
조사관 처우	조사관 수당	*시간(20시간)기준 30만원 *건수 기준 1사례당 40만원 1. 시간기준: 30만원 = 1시간 15,000원x20시간(조사 10시간, 보고서 작성 5시간, 사례회의 시간, 심의위원회 참석2시간 등) 30만원 *시간당 15,000원 이상 지급 2. 건수 기준: 40만원 = 사안조사부터 심의위 참석에 필요한 모든 활동 포함	건당 최저 20만 초과	Q 시·도	• 30~40만원
				H 시·도	• 30~40만원
				M 시·도	• 40만원 내외
				J 시·도	• 21~40만원
				K 시·도	• 30만원
				C 시·도	• 21만원(최대 27만원 이내)
			건당 최저 20만 이하	N 시·도	• 18만원
				I 시·도	• 20~39만원
				F 시·도	• 20~30만원
				E 시·도	• 15만원(최대 30만원 이내)
				P 시·도	• 20~40만원
				G 시·도	• 20~30만원
				O 시·도	• 15~40만원
				A 시·도	• 20~30만원
			다양함	B 시·도	• (기준없음)
				D 시·도	• (시급15,000원) 활동 시간 기준 지급
				L 시·도	• 최대 40만원 이내, 1일 수당은 최대 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조사수당: 기본(4시간 이내) 30,000원, 4시간 초과시 20,000원 추가 + 여비 20,000원) .

분류 배경	해당 항목	교육부 운영계획	분류 기준	분류 지역	17개 시·도교육청별 해당 내용
	조사 건수 (1인당)	(기본)1인당 연 23건 내외(경미한 사안 14건 내외, 중대한 사안 9건 내외) (예시)활동시간 일 2~3시간, 주 15시간 미만, 월 55시간(4주 기준, 최대 월 60시간 미만) *시도교육청별 결정 가능	월 2~3건 이내	Q 시·도	• 교육부 기준과 동일하게 제시함
				H 시·도	
				P 시·도	
				G 시·도	
				O 시·도	
				C 시·도	
				L 시·도	
				A 시·도	
			월 3건 초과	I 시·도	• 월 10건 이내
				F 시·도	• 4~5건
			다양함	N 시·도	• 기준 제시 없음
				M 시·도	
				E 시·도	
				J 시·도	
				K 시·도	
				D 시·도	
				B 시·도	• (근무형태에 따라 다름) 상근직은 1개월 10~20건, 위촉직은 1개월에 2~3건 조사를 원칙으로 함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간담회 분석

먼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초기('24년 6월 25일) 개최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간담회',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주최 유튜브 방송(https://www.youtube.com/watch?v=40dmGS-gMk4)을 녹취한 자료를 2차 자료로 분석해 보았다. 학계, 현장 교원, 전담조사관 등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성과 및 한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 참석자들은 제도의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었으나, 비판적 시각이 주류였고, 따라서 다양한 개선점이 제시되었다.

1)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여부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의 경감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다른 업무 부담의 경감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했다. 회의적 시각에서는 사안 발생 후 사안 접수를 위한 1차적 사실관계 조사를 교사가 실시하고, 사안 접수 후 학교폭력전담조사관과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일정도 조율하며,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해야 하고 학부모 민원에 여전히 교사가 대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업무경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심지어 '교사가 학교폭력 조사관의 비서가 된 듯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긍정적 시각에서는 양적 부담 경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질적 부담(책임에서의 자유 등)은 분명 경감되었다는 견해가 있었다.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조사관 활동으로 업무가 경감되었고, 무엇보다 질적 측면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나아가 조사관이 사실 확인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진행해 주어 교원과 학부모 간의 감정 대립 및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조사관에 대한 신뢰로 악성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는 인식이 있었다.

"조사를 할 때 정말 많은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게 돼요. 교사가 그럼 이걸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나 교사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감정 노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보면 애들이 100장 200장 증거물로 가져와요. 그거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심리적인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일 수 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의 경우 책임교사로서 책임이

경감돼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조사관이 함께 동반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힘이 되었다.. 교사와 동석을 할 때 동석하는 시간이 있어요. 절대적인 시간을 보면 조사를 하면 저희가 조사 보고서 꾸미기 위해서 다 애들 조사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시간을 배석을 해요. 동석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양쪽으로 보면 비슷한데 저는 질적으로 보면 감소했다고 봅니다. 심리적 부담감이 있잖아요. 질적으로 따져보면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다 집단폭력 생기면 15명 20명 조사해야 되거든요. 보고서 50장 60장..."

2)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시행으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강화된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었다.

(1) 객관성

교사가 임의로 조사할 경우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조사관의 경우 '학생 작성 확인서 질문 리스트'를 사용하므로 조사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 확인서 꼭지가 한 15개 6개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는)연수 받은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교육청에서는 알아서 해라 가이드북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 꼭지를 한 15개 읽어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조사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사가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체계성

단계적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됨으로 체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차적으로 사안 접수 보고를 할 때 첨부되는 사실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오시고 또 이 질문 리스트를 주심으로써 학생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시고 필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서 사건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3) 신뢰성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조사관들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호자의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4) 공정성

제3자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만한 조사로 공정성을 담보하여 추후 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 조사관의 경우 '조사 업무 외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않도록 함'이나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는 등 「조사관의 업무수행 기본 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지자체마다 다른 진행 절차나 조사관의 급여 등 일관되지 않은 처우가 자칫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3) 동석 문제

동석과 관련해서 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학생의 심리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을 보호하자 그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이든 가해 학생이든 학생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부분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판단해 달라는 그런 전문적인 판단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그게 매뉴얼상으로 강제화하거나 의무화하는 내용과는 조금은 상이한 부분인 것 같고요."

교사들은 동석 자체보다는 동석으로 인해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석 의무 같은 경우 아까 조사관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사실 현장 교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동행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조사관님이 강압적 조사를 할 때 교사가 가만히 있었다. 방관으로 인한 아동 학대 아니냐 하실 수도 있고요. 잘못된 개입을 했을 때 민원이나 고소를 받지 않을까 하는 현장 선생님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 배석 등의 문제도 법령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4) 일정 조율 문제

교사가 모든 일정을 조율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일정 조율 관련 명확한 시스템 요구가 있었다.

"해당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에 교사가 전화를 직접 걸어서 확인하는 방식 따라서 학생들에게 일정 통보할 때 약간의 촉박함이... 따라서 이런 사안 담당 교사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이에 일정 통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게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이제 사안 조사 담당자 그리고 전담 조사관님들 사이에 일정 조율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 외국 사례처럼 조사관님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냥 학부모님과 학생을 부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처럼 교장 선생님이 아동학대다 학교폭력이다 와라 하면 꼭 와야 되듯이... 일정을 짤 때 학교를 거치기보다는 관련 학생들과 교육지원청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일정을 짜는 것이 어떨까?"

5) 민원 문제

민원 관련해선 담당 교사와 조사관 모두가 나름의 고충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양자 모두 일정 조율을 맡을 경우 악성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고 염려하였다. 따라서 보호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조사 배당을 받으면... 3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조사관 보고 일정까지 다 체크를 해서 하라고 하면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을 다 조사관이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런 조사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업무를 맡기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6) 그 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보완을 위한 다양한 견해

- 조사관들의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는 법령 정비 필요
- 행정적 절차에 대한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명확한 숙지 필요
- 장기적으로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조사관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 구성 체계의 변화 필요

"앞으로 이 법을 좀 바꾼다면 학교폭 경찰에 행사 고소나 고발을 하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 없게끔 좀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경찰로 바로 넘기면 안 되나 넘겨버린 것은 이제 그냥 거기서 100% 처리하고 학교 폭력 아주 약한 거나 이런 것만 이제 이렇게 옛날처럼 선도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 학교폭력 사안 자체를 교육청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

"... 학교 폭력을 자체를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면 안 되나 아니면 경찰로 이관시키면 안 되나 하는 생각... 작년 10월에 이제 대통령과 현장교사 간담회 할 때 당시 대통령께서 학교폭력을 경찰로 이관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와 학교 폭력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

학교폭력의 근원적 원인인 On-Off 라인 상의 관계와 사회성을 포함한 예방 교육이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다.

"모든 것들이 어떤 조사관 제도 하나를 개선하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방 교육부터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 단순히 조사관 제도의 개선을 만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하

지 않을까 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경우에도 사귄 사이였는데 가·피해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관계성 사회성 부족이 조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는 SNS가 굉장히 좀 문제예요. 예방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전문가들의 시각은 질적 차원의 업무 경감이나 조사의 객관성 담보 등 긍정적 시각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확한 의미에서 개선점이라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도입 초기 교육 현장에서 아직 안정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3. 초·중등 교원 의견 수렴 및 시사점 도출

24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24년 12월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의 초·중등 교원과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전담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정착 여부와 지속적 시행 여부, 제도의 지속 시 개선할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된 바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초기의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참석자들은 제도 초기의 경우 국회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비판적 시각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제도의 미래지향적 지속성을 전제로 다양한 생산적인 보완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 참여자들인 초·중등 교원의 의견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등 교원의 경우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아직 도입 초기처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조사관이 맡게 될 사안의 범위 불확실, 사소한 사안이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며 오히려 심각해지는 경우,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보호 받아야 될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 안 받아도 될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모순점 지적, 스케쥴 조정 등 무엇보다 학교폭력 신고 남발 등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고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단적인 사례로, 학생 한 명이 그 학년 전체 217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자기 학습권 보호를 위해 217명을 등교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두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 학교가 상호 존중하는 관계 정립의 필요성이다.

"학부모와 교사와 학교가 전부 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존중받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현재는 완벽한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학부모에게는 권리만 있고 우리에게는 의무만 있는 ...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모두가 책임과 의무가 공존되는 법률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 못하고 끝까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둘째는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이었다.

"그러면서 느낀 결과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영원할 거예요."***

초등 교원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특히 본 조사에 시사점을 주는 두 가지 직접적 개선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일원화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마련이다. 안건을 제시한 교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또 하나의 요건이 학교폭력 사안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총체적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일원화된 시스템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교원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 시 학생의 치료를 위한 학교 안전 공제시스템'과 같은 일원화된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실제적인 모델도 제안하였다.

0단계
조사·중재 접수
(학폭법 제25조 근거)

AI 챗봇 활용(교육청관할)
*나이스 배너 통해 연결
-사안처리 절차 안내
-관련 영상교육 이수
-접수 신청 서류, 절차 안내

↓

보호자가 서류 제출 및 사안접수
접수신청서
: 사안 개요 및 조사·중재 동의 확인
학생·보호자 개인정보서류
- 최종 접수 단계에서 '접수 제출 시, 사안조사와 중재가 즉시 시작되며 제출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항목에 동의 필요 (무분별 접수 방지)
챗봇에서 학교폭력 조사·중재회(사이트 또는 어플로 연동)에 서류 제출
* 챗봇, 사이트,어플 모두 나이스 배너로 접근 가능
* 교사가 먼저 사안 접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보호자가 접수

↓

학교장에게 접수 알람
(학교의 사안 인지 차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중재단 현장 출동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중재전문가의 조사 및 중재, 상담 실시

참고: 00연구회의 현장교사정책TF 보고서 내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수정, 보완, 제안

"학부모가 그러니까 훨씬 더 신고를 덜 하게 될 거고 본인도 이제 신고를 할 때 좀 더 신중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가서 접수를 하거나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라고 하면 학부모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요지는 학교폭력 신고가 전화로 이루어지다 보니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학폭신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접수 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도록 요구하면, 아마도 불필요한 신고가 심리적 위축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취지이다. 위 매뉴얼은 일원화된 사안 처리의 구체적 제안 모델이다.

둘째, 실효적이고 정밀한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을 위한 매뉴얼 마련이다.

"사실 그리고 매뉴얼 집필할 때 … 전부 교육청 분들이 들어와서 집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육청 입장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써졌어요. 매뉴얼이 그래서 검토진들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검토진들 말 결국 안 받아들여졌고요.… 교사의 목소리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정밀하고 실효적인 매뉴얼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매뉴얼 관련 사안은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및 시사점

전체적으로 교원 업무 경감,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 향상과 민원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속적 시행에 찬성이나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담조사관의 선발조사 권한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명시, 전담 조사관제 교육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학교 자체 조사와 전담조사관 조사의 영역 명시, 교사의 권위 상승 및 전담조사관의 역량 제고(연수, 워크숍 등의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봉사직, '위촉직'이 아닌 공무직 형태의 조사관 제도 변경) 등이었으며 무엇보다 적확한 매뉴얼 계발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일례로 학교(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관이 조사하는 '사안조사학교요청제' 도입을 건의하였다.

1) 학교나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

학교나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은 실제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응답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안조사에서의 민원으로부터의 해소,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등이 언급되었다.

(서울) • 학교의 업무 경감, 곤란한 민원의 기피, 객관적인 사안 조사 요구 등	(강원) •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다양화, 민감한 사안 조사로 학부모 및 학생 대면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사안 조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경감 및 학부모로부터의 민원 해소(공정성 및 전문성 시비, 아동학대 신고 예방)
(부산) • 활용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함. 교사의 업무경감 효과가 크고 학부모의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음. 또한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에 대해 공정성 등으로 만족 비율이 큼	(충북) • 교원에 의한 사안조사만 가능했을 때에는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있었음. 또한 사안을 조사하는 담당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의 이유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 기피 현상을 초래하였음.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위와 같이 학교 또는 교원에게 향하는 악성 민원의 방향을 돌릴 수 있었으며, 학부모들도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교원에 의한 조사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대구) • 전담조사관이 투입되면서 학부모의 민원 감소,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을 전담조사관이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함	(충남) • 학교폭력 책임교사(학교 측)에서 전담조사관을 활용하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및 그의 학부모들 또한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이 조사하길 원하기 때문
(인천) • 학교 담당자의 업무경감 및 보호자 민원 방어	(전북) •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사안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사안처리 과정의 학생 및 학부모 민원 감소 등
(광주) • 조사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조사관의 전문성이 향상되었음	(전남) •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을 경감,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학부모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등 민원의 감소,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 부분, 학교폭력 사안조사 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
(대전) •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민원으로부터의 해소,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등	(경북) • 교원 업무 경감,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 향상, 학교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례 증가

(울산) • 기존(2024.2.28. 이전)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식이 학교 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라 학교에서 업무 부담이 있었는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용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가 경감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함	(경남)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사안 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 등의 이유가 있음
(세종) •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담임이 피가해 관련 학생을 조사하지 않아 업무가 경감되는 측면과 국가시책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되어 모든 사안에 활용하라고 권장했기 때문	(제주) • 사안조사에 대한 중립성 문제(가·피해관련)에 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음. 복잡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교육청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경기) • 제도 도입의 효과 :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사안 처리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 〉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 〉 학생 ·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높아진 경각심 등의 이유로 제도의 효과 • 업무부담 감소: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사안 조사 책임에 대한 교원의 심리적 부담 〉 피·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및 악성 민원 대응 〉 피·가해학생사안조사 및 증거 확인 등의 업무 부담 감소	

2-1)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과 선택을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만 위임한 상태 여부

제도의 시행과 선택을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만 위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양성을 언급함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전담 조사관이 모두 조사하는 경우와 교육지도로 충분한 경우 전담조사관 보다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계도하는 경우,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서울) •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 자체 조사 의지, 생활교육에 대한 교원의 책임감	(강원) • 도교육청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는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교육지원청에 유형에 맞게 지원 〈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유형 〉 ■ 1유형: 전담 조사관이 관련학생 면담 후 사안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 ■ 2유형: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실확인하고 전담 조사관이 관련 서류 검토 및 관련 교사 면담 후 보고서를 작성 ※ 전담 조사관의 수당은 산출 근거에 따라 차등 지급 ■ 3유형: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실확인하고 보고서 작성 ※ 2유형과 3유형 진행시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미배정 요청서〉를 함께 제출
(부산) • 학교폭력 발생 시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 가능	(충북)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의 취지를 연초에 지원청별 담당장학사와의 협의회를 통해 공유하였으며, 공문을 통해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운영 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였음.(특별한 사유는 교육지원청에 위임하였음)
(대구) • 대구시교육청은 본청에서 운영	(충남) •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전담조사관 조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나, 개별 사안 상담 시 교사 또는 담당장학사(주무관)에게 전담조사관 활용 여부를 제안하기도 함
(인천) • 시교육청: 조사관 선발 및 위촉, 전문성 강화 교육 연수, 교육지원청: 조사관 배정 및 수당지급, 보수교육	(전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 위임에 따라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전담조사관을 위촉하여 관할 학교에 배정하고 있음

(광주) • 조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 및 운영, 연수는 지원청에서 담당하며,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음. 특히 시청,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등과 같은 대외 기관 협력은 교육청이 담당함.	(전남) • 교육청 단위에서 기본 계획을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기본 계획을 참고하여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지원청의 특성에 맞게 전담조사관제도의 전면적용과 부분적용 등 청 사정에 맞게 조율하고 있는 상황
(대전) •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제도 시행 - 시교육청: 사안처리지원 및 종합지원단 운영, 피해회복지원단 운영,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 지역교육청: 전담조사관 및 사례회의 운영, 교육청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경북) • 시행은 22개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운영, 대부분의 조사를 전담조사관이 담당, 일부 특별한 경우는 학교 및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관 투입 여부 판단
(울산)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 구축과 연수 등 제반 업무처리는 본청이 담당하고 있음	(경남)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계획,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위촉 기준 마련, 역량 강화 연수 등은 도교육청에서하고 위촉과 배정, 수당 지급 등은 교육지원청 실시함
(세종) •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화해중재부와 논의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집중형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음
(경기) •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 경기도교육(지원)청은 조사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가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 - 2024 경기형학교폭력사안처리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한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과 지침 안내 - 조사관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자료(가정통신문, 카드뉴스, 포스터) 배포('24.4월)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노력) - 경기교사노조-경기도교육청 정책협의를 통한 의견수렴('24.3월, 11월) - 도교육청 현장자문단,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대상('24.3월, 7월, 10월, 12월) -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25개청, '24.4월~5월, 12월)	

2-2)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된 이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시행과 선택을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만 위임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피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 사안 조사는 조사관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가 자체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 가능	(강원) • 사안 조사 지연으로 인한 사안 오염 문제 • 외부인의 조사 등을 거치면서 오히려 자체 해결이 안 되고 심의위 요청 사안으로 발전 우려 • 조사관과의 미팅 일정 조율 및 업무 처리로 인한 행정 처리 가중
(부산)	(충북) •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교원에 의한 빠른 조사로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요청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조사관을 배정하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관련학생들간 분리 시간과 갈등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 또한, 전담조사관의 학교 방문 및 관련 학생들, 학부모들과 조사시간 조율과 관리등 담당교원의 업무가 적지 않음
(대구)	(충남) •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볼 수 없거나 교육지도로 충분히 관계개선이 가능할 경우 전담조사관을 활용하기 보다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계도하는 것으로 보임
(인천)	(전북) •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 자체 조사를 원하며 전담조사관 배정을 미희망 •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의지 • 신속한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 전담기구 조사 활용 등
(광주)	(전남) • 전담조사관 사안조사에 대한 일정 조율과 조사관에게 학생의 특성, 사안 관련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분,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 교원이 동석해 업무가 오히려 과중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대전)	(경북) •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학생이나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함, 학생이 거부하는 사례도 있음.
(울산) • 사안이 경미해서 즉시 학교에서 조사가 가능한 사안이라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과 학부모 사이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더 큰 업무부담이 되어서 • 교사 동석 등 사안조사외 부가적인 업무가 부담되어 업무경감이 체감되지 않아서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역량이 부족하여 사안처리를 맡기기 어려워서	(경남)

(세종) • 접수되는 사안은 전담조사관이 모두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
(경기) • 경기도는 학교폭력 접수된 모든 사안에 전담조사관이 배정되어 사안조사 및 사안조사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음	

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지속적 시행 동의 여부 및 이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지속적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동의 그리고 제도적 개선과 함께 동의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 학교 업무 경감 지원 차원에서 시행 동의	(강원) • 동의함. 주된 이유는 1) 사안조사보고서의 일정 수준의 질 확보로 심의위원회의 적절한 판단 용이 2) 사안 조사의 미흡한 점이나 보완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전담조사관과 소통하여 재조사나 서류 보완 제출 등의 용이 3) 교원은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의 전문가이자 본연의 업무인데 심의위원회 판단자료 및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사법적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되는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사관 제도로 이러한 어려움 해소 4) 사실 확인 및 피 가해 구분 등에 집중하던 시간을 학생을 상담하고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 및 성찰과 책임을 위한 교육적 지도로 학생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5) 사안 조사를 하면서 사제 간의 관계 악화 및 교육자로서의 권위 상실 등의 문제 해소 기대
(부산) • 동의함, 학교의 만족도가 큼(만족 이상 80%)	(충북) • 지속적 시행에 동의하며, 그 주된 이유는 학교와 교원에게 향하는 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
(대구) • 기존의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업무가 현재 학교의 생활부장의 업무 경감과 학부모의 강한 민원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므로 지속적 시행에 동의합니다.	(충남) • 지속적 시행에는 동의하나, 제도적 개선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4번에 기술

(인천) • 동의함. 학교 담당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전북) •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담당교원의 업무 경감,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취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광주) • 지속적 시행에 동의함. 학교의 부담 감소,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함.	(전남) • 검토가 필요해 보임
(대전) • 선생님들이 사안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의 조사에 신뢰함	(경북) • 교원 업무 경감: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은 교사의 본래 역할과는 거리가 있으며, 큰 부담임,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수이며, 학교에 집중되던 민원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장점이 있음, 지속적인 전담조사관 활동으로 전문성 향상 및 학부모의 신뢰도 회복 가능
(울산)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의 지속적 시행에 동의함 • 이유: 제도시행으로 인한 단점이 있지만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경감 및 학교폭력사안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등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만함.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지속된다면 조사능력이 우수한 전담조사관이 다수 양성될 것으로 예상함.	(경남)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변경 시행에 동의함. 시행에 동의하는 필요한 이유는 전담 조사관의 만족도,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가 긍정적 결과가 나왔기 때문임. 단 위촉 형태의 전담 조사관보다 공무직 정규직 형태의 전담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변경 시행을 요청함.
(세종) • 동의함 • (사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올해부터 도입되었고, 1년의 기간을 운영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짧은 기간 운영하고 또 변경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됨	(제주) •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행 필요(동의)
(경기) • 조사관 사안조사 전문성 – 조사관의 사안조사 역량에 전문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다수 • 신뢰도 제고 – 의견수렴 및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한 설문(교육부 위탁)에서 응답자 중 60%이상이 사안조사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개선되었다는 응답	

4) 향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지속적 시행에 대한 검토 여부 및 이유

향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검토 요청 사항에 대하여 조사관 신분 보장 강화, 조사관의 역할과 수행에 대한 법률적 제도개선,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 등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학교(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관이 조사하는 '사안조사 학교요청제'도입이 인상적이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평가된다.

(서울) • 시행에는 동의하지만 조사관 신분 보장 강화 등의 보완 필요	(강원) •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명시 필요 ※ 현재는 전담기구의 기능을 위임받아 하는 정도 명시 • 전담조사관 조사보고서 제출 및 관리 등에 관한 문제(보안관리 문제 등) - 전담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가 전담조사관의 개인 디바이스 등에 소장되어 있을 수 있음. 현재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고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는 수시로 폐기하나 개인 디바이스에 보관하는 자료에 대한 관리 문제 • 전담조사관의 일정 수준의 질 관리 - 현재는 전담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가 검토 후 학교로 송부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로 업무 장학사 업무 과중
(부산) • 법률적인 검토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할 수 있으나,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 • 학교의 역할 세우기 방법에 대한 고민 :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업과 생활지도이나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렵다고 하니 생활지도, 학교폭력 업무를 계속 교육청에서 대신해준다면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 수 있지만 학생을 지도하면서 그 관계에서 형성되는 레포도 감사하며, 지도하는 역량 또한 계속 감소하게 됨. 궁극적으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을 바로 세워 학교가, 교사들이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충북) • 지속적 시행에 검토할 부분은 현재 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퇴직공무원, 기타로 이루어져 있음. 이는 향후 시간이 지나 전담조사관의 경력이 쌓이고 조사전문성과 역량이 높아진 조사관들이 고령으로 인해 조사를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장기적으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담조사관들의 선발이 필요함. 이에 따른 신분 및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함.
(대구) •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지만 방향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경우 교사의 본래 업무인 수업을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데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학생·학부모의 민감도 또한 높아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과중이 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 또한 학교폭력 발생 예방과 책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는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시행 또한 책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전담조사관에게 모든 조사를 일임하여 학교폭력 업무 자체에 손을 떼려는 담임교사 및 책임교사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전에 교사가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발생하지 않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피해학생측에서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전담조사관에게 전달되지 않아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보고서에 미기재 된 경우도 상당수이며, 아주 경미한 사안임에도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보다 모든 조사를 전담조사관에게 떠넘겨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주무관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음.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학교 자체 또는 전담조사관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또 다른 문제로는 학교폭력의 경우 큰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지역 규모에 따라 전담조사관 수가 상이한데 작은 지역 중 전담조사관이 모두 남자인데 그 지역에서 성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조사관이 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각 지역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전담조사관을 운용하거나 작은 지역에 한하여 시군 통합 채용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천) • 검토 필요. 너무 급하게 제도가 시행되어서 필요한 수를 채우려다 보니 조사관의 전문성 부분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 때문에 학교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고, 전담조사관의 불만이 생기기도 함.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전담조사관으로 선발할지, 어느 정도의 사안에 전담조사관이 배정될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전북) •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는 전담부서에서 조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미비한 법적 근거만 존재 –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지위 부여 • 전담조사관 도입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전담조사관을 통한 공정성 있는 사안 조사 역할을 주로 하되, 관계 개선(학교장 자체해결) 절차에 대한 초기 안내자 역할 병행 필요 – 전담조사관을 활용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능력 제고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반복적 연수 필요

	– 사안 조사 및 정확한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역량, 민원 응대 역량,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식, 라포 형성 및 소통 역량 강화 등
(광주) • 현행과 같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담조사관 파견과 같은 형식이 아닌, 학교의 선택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관제 파견을 고민해야함.	(전남) • 전남의 경우는 학교폭력전담지원 인력인 주무관이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불복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음. 현재 학교전담기구의 조사나 학부모면담이 교육지원청에서 위촉된 전담조사관으로 넘어오면서 과부하가 오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선도와 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의 권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대전) • 법률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선발하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가 가능하기를 바람, 학교에서는 작년에 하지 않았던 업무를 학폭건이 발생할 때하다 하는 것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힘든점인 것으로 파악	(경북) •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 관련 • 체계적 성과 분석 및 효과성 검증 필요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 여부 • 학교(교사)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갈등 해소
(울산)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일정한 질관리가 필요함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상시 근무, 임용, 권리확보와 관련하여 향후 교육청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제도 취지에 맞는 명확한 제도 운영에 대한 원칙이 필요함	(경남)
(세종) 검토 필요 • (사유) 지속적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 뿐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운영 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함 (지속 운영 시 전담조사관 채용 기간 등의 사유로 봉사직으로 위촉이 어려울 수 있음. 정규직 전환 요구 등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여 제도 도입 초기의 목적 및 필요성이 희석될 수 있음)	(제주) • 조사관의 역할과 수행에 대한 법률적 제도개선 필요 • 위촉 방식이 아니라 채용 형태를 통한 전문가 양성 필요(조사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조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학교의 도움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현재 제도로는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없음.)
(경기) • (조사관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권한/범위 재정비) – (학교요청제 도입) 학교(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관이 조사하는'사안조사 학교요청제'도입 (개선안)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 피해학생 보호,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소속교원·전담기구에서 조사 가능	

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후 교육청에서 긍정적 평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후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으로 단위학교의 사안처리 부담 감소, 사안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물리적 심리적 업무 경감, 학교의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부담 감소 등 현장에서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서울) • 사안 조사 보고서의 학교 간 편차 해소	(강원) • 사안 보고서의 질의 균일화 및 소통의 용이 • 교사의 업무 경감, 심리적 부담 해소 사안 조사로 인한 사제 간의 갈등 및 학부모의 민원 감소
(부산) • 학교 간 사안 조사 시 조사관님 한 분이 조사하여 사안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용이함. • 학생, 학부모를 교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 조사 객관성이 높으며 신뢰도가 확보됨. • 객관적 입장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이면의 인과관계도 심도 있게 짚어냄. • 복잡한 갈등 조정 사안의 경우 교육청 연계 센터를 활용해 별도의 상담을 진행한 점이 유용함. • 학부모 민원 부담이 줄어듦.	(충북) • 학교 및 학교폭력 담당교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감소하였음.
(대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투입으로 사안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판단합니다.	(충남) • 전담조사관들이 조사를 맡음으로써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이 어느정도 실현되었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됨. 또한 조사에 일가견이 있는 퇴직경찰들이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하여 조사에 전문성이 더해짐.
(인천) •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여 학교 담당자의 학부모 민원응대에 대한 어려움 감소.	(전북) •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 대한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 • 공정한 전담조사관 제도 시스템 구축으로 허위 신고, 과장 주장 등이 감소(예상) • 담당교원의 업무 경감 및 심리적 부담 감소로 학교생활교육 및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④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악성 민원 감소로 학교 공동체 간의 신뢰성 회복
(광주) • 단위학교의 사안처리 부담 감소 •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제도가 지속되면 현제보다 전문성이 높은 조사관 배출이 가능하여 사안조사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전남) •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켜줌,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높아진 경각심 고취 등

(대전) • 사안조사보고서를 전담조사관이 작성함으로 인한 업무 경감. • 학교가 사안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학부모와 마찰이 거의 없었으며, 경찰관 출신 조사관님이 사안조사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적절한 안내(sns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등)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됨	(경북) • 교원 업무 일부 경감 • 교사 대상 학폭 관련 민원 감소 • 노인 일자리 창출 • 전담조사관을 통해 조사 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을 통한 예방 정책 수립의 토대 구축
(울산) • 첫 번째로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조사관련 직접적 민원을 대응하지 않아 좋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음. 과거 객관적인 조사를 한다고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갈등이 깊은 사안의 경우 가·피해측 모두에게 민원과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직접 조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학교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감소했다는 의견을 듣고 있음. 두 번째로는 전담조사관이라는 직함의 무게가 관련학생, 학부모의 조사협조를 요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역량에 대한 평가는 신규교사나 업무를 처음 맡으신분들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다수임. 세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인데 사안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내용에 대한 풍부함이 과거 학교에서 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보다 상당히 진전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음. 학교에서 조사할 때는 조사해야 할 것을 놓치고, 보고서에 적시해야 할 내용을 민원 때문에 축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경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관련 학생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다고 판단함. 단 업무 경감 부분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지점들이 있음.
(세종) • 사안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 학교의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부담 감소	(제주) • 단위 학교 학교폭력업무담당자 민원 감소.
(경기) • 조사관의 조사역량 전문성, 사안조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 등	

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개선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적정 규모의 조사관 위촉, 고용의 안정성 보장, 전문성 강화 및 해촉기준의 명확화, 봉사직(위촉직)이 아닌 공무직 형태의 조사관 제도 변경, 즉 전담조사관의 정규직 전환 요구 등 제도가 지속 운영 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 특히 표준화된 조사관 매뉴얼 구축과 전담조사관 학교요청체 도입 등이 거론되었다.

(서울) • 조사관의 조사 여부에 대한 학교의 선택권 보장(서울은 2024년 이미 시행 중)	(강원) •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 • 사안조사 절차 중 사례 회의의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 - 현행은 모든 사안을 사례 회의하라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문서처리의 과도 등으로 실행 불가 • 사안 조사 및 심의 절차 관련 법령 정비 - 일정 요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은 심의가 아닌 갈등조정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법령 정비 필요 ※ 일정 요건이나 기준의 예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안은 갈등조정전문가가 사안을 조사하고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부산)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부분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책임자는 학교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체를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폭력 업무 전체를 교육청에서 하라는 요구가 있음. 이에 학생들간의 조그마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갈등을 해결 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여 전담조사관을 요청하고, 전담조사관이 결론내려주기를 원함. 이런 인식들이 지속된다면 학교는 생활지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될 우려.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학교의 역할들을 명시하는 지침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충북) • 현재 전담조사관은 위촉직임따라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전담조사관의 연령이 높음에 따라 학생들과의 언어적 괴리감도 있음. 이에 좀 더 연령이 낮은 조사관을 선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대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 홈페이지가 개발되어 학교가 현재 가장 힘들어하는 일정 조율을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와 전담조사관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 희망하는 시간을 작성해서 선택하면 더욱더 업무경감과 민원 감소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충남) • 4번에 기술함
(인천) • *학교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검토하지도 하고 무조건 전담조사관을 요청하거나, 무조건 학교에서 조사하는 등 편차가 있음. 무분별한 전담조사관 배정 시 예산의 소비가 됨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음. • *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시도별로 시행방법(조사방식, 수당지급 등)에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음. 전국적인 제도임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음. • * 전담조사관의 신분이 애매함. 지속적 시행이 된다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북) • 전담조사관-학교-교육지원청 간의 조사 일정 조율에 대한 통일성 있는 방안 마련 •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교원 동석 방법과 교원이 동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교육부의 통일성 있는 지침 마련(단순 매뉴얼은 지양하고 법적 근거, 교원 동석 여부, 조사 수당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동 지침 필요)
(광주) • 봉사직(위촉직)이 아닌 공무직 형태의 조사관 제도 변경이 필요함. • 1교1조사관 배치를 통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생활규칙 위반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전남) •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이 경미해 전담기구 조사가 더 효율적일 때 조사관제도가 불필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정 요청 전에 사안조사가 마무리가 되거나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음, 사안의 특성, 학생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담기구 조사가 더 나은 경우도 있음, 피해학생 측이 전혀 알지 못하는 조사관보다는 학교선생님인 전담기구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조사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대전) •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교육청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	(경북) • 사안에 따라 조사관 투입의 여부 결정을 위한 기준, 예시가 필요 • 지역별 상황(사건 발생 빈도, 학교 규모 등)에 따른 유연한 배치 기준 마련 •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개설 • 학교(교사)와의 명확한 업무 분담 • 전담조사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마련
(울산) • 단점으로는 단위학교 신규, 저연차 경력 교사와 달리 학교폭력 업무관련 베테랑 교사의 입장에서는 조사 일정 조율 등이 너무 번거로운 업무이고, 조사관의 조사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수사하듯이)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음. 또한 조사능력에 대한 개인적 기량이 너무 상이하여 단위학교에서 전담	(경남)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조사 시 신뢰인의 동석 지침을 구체화하여야 하고, 의무였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하여야 함. 효율적이지 않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은 폐지하여야 함.

조사관의 질관리에 대한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음. 법률과 시행령에 전담조사관의 신분보장에 관련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의 입장에서도 조사과정 속에서 신분적 불이익이 있을까봐 매우 불안한 상태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전담조사관의 지속적 연수를 통한 질관리와 신분보장(채용을 제외한 업무관련 정당성 부여)과 관련된 법률 조항 제정 필요함.	
(세종) • 전담조사관의 정규직 전환 요구 등 제도가 지속 운영 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학생, 학부모와 면담 날짜와 시간을 정할 때 책임교사를 거치지 않고 전담조사관과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 도모 • 전담조사관 조사 시 업무담당 교사의 배석 여부에 대한 시도별 통일된 가이드 라인 필요	(제주) • 질문 3, 4번 응답 동일
(경기) • (위촉 및 채용 관련 개선방안) 적정 규모의 조사관 위촉, 고용의 안정성 보장(연임 규정 등),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해촉기준의 명확화 • (사안 배정 관련 개선방안) 조사관 사안배정 온라인 기반 시스템 마련 • (제도 운영 개선방안) 표준화된 조사관 매뉴얼 구축, 전담조사관 학교요청체 도입(사안조사 추제의 이분화(전담기구 및 전담조사관)) • (역량강화) 피·가해학생 학부모 대상 면담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의 완결성 제고, 피·가해학생과의 라포 형성 및 소통역량,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 지식 등	

7)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법적 보호 방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익명성 보장, 전담조사관에 대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개발, 심리 상담지원 등 다양한 생산적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조사관의 활동 보호 규정 신설 필요를 거론하였는바, 다분히 시의성이 있어 보인다. 예시)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소송 시 지원	(강원) •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명시 필요, 현재 전담조사관 역할에 대한 근거는 학폭법 제11조2(교육감의 의무) ②항에 따르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함. ※ 학폭법 제11조2(교육감의 의무)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 • 대부분 시도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위촉직으로 과도한 민원에 노출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휴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지원 등)	(충북) •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시 확실한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아닌 경우 신고하거나 고소·고발 할 수 없는 법적 근거 필요
(대구) •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명확히 명시하여 전담조사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남) • 전담조사관의 신분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각 시도 교육청마다 전담조사관의 신분이 다른데(교육공무직 또는 위촉봉사직) 교육공무직으로 활용하는 교육청에서는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위촉봉사직으로 활용하는 교육청에서는 사고 시 보상이나 감독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가 됨. 그러므로 교육부에서 전담조사관의 신분을 통일시키고 그에 따른 활동이 필요함.
(인천) • 현재의 위촉직 상태로는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음.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방식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전북) • 조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 마련 • 전담조사관 법적 지위(위촉직)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조사권 부여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광주) • 공무직 형태의 조사관제도 시행에 따라 전담조사관을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과 같은 법적 위상 정립이 필요함. 이를 통해 이들의 책임과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함.	(전남) •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학교폭력예방법 11조의4제3항에 의거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이 있음에도 실제 민형사상 학부모와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사관도 마찬가지라고 봄. 조사관이라는 명칭만 있지 권한도 수사도 의무도 없음
(대전) • 전담조사관으로 활동 시 제기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해 보임	(경북)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 개인정보보호: 익명성 보장, 전담조사관에 대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개발, 심리 상담지원
(울산) • 조사관 신분보장을 위한 법률조항 • 업무 범위와 활동 내용에 관한 매뉴얼	(경남) • 위촉직에게 법적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 전담 조사관들 지위가 바뀌어야 가능함.

(세종) •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화, 근무시간 등) • 시인 조사시 전담조사관과 학생, 학부모가 1:1로 조사할 경우 조사관의 언행에 대해 주관적 판단으로 위압감을 느꼈다고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	(제주) • 법률에 조사관이라는 수행자에 대한 명확한 역할 명시 필요 • 조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아동학대 등)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면책 조항 명시
(경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조사관의 활동 보호 규정 신설 필요 예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정당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의 시행령과 궤를 같이하여, 조사관의 업무 수행 및 위촉 및 해촉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	

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경감 등의 긍정적 기여를 위해 반영되어야 할 것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경감 등의 긍정적 기여를 위해 반영되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역시 앞의 개선점이나 발전 방향과 유사한 다양한 생산적 대답이 있었다. 그중 상대적으로 새롭게 보이는 점은 조사관을 통한 관계조정 프로그램 연계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로, 전담조사관에게 사안 조사와 갈등 중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자는 제안이었다. 일례로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을 갖춘 전담조사관 확보 및 학부모 동의 시 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운영안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권한 확보, 타시도 및 지역교육청 간 공동학폭 발생 시 신속한 사안조사보고서 공유,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시한의 적절한 설정 등이 있었다.

(서울) • 조사관의 사안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워크숍 등의 기회 확대 조사관을 통한 관계조정 프로그램 연계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	(강원) •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의 충분한 인력 확보로 학교가 요청 시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지체없이 지원 • 사안 발생 시, 사실확인서 제출 없이 바로 간단한 유선 혹은 전용 접수 앱을 통해 전담조사관 투입 • 전담 조사관은 사안 조사와 갈등 중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강원도의 경우, 갈등조정전문가(갈등전환지원단) 자격을 갖춘 전담 조사관을 확보하여 학부모가 동의할 시 관계 개선 프로그램 바로 연계하여 운영
(부산)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역량(학교폭력 업무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신념 포함)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대한 대우(수당, 보호방안 등) • 학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지	(충북) • 학교별로 전담조사관이 1명씩 상주하여 조사 업무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음.
(대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의 일정이 조율될 수 있는 홈페이지 개발과 다양한 연수자료 개발 및 학부모의 가정에 전담조사관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 홍보를 통하여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전담조사관 본인과 교육가족에게 인식하게 하고 전문성 있는 전담조사관 확보를 위하여 신분과 보상(처우개선)을 확실히 해야 업무경감과 공정한 조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될 것임.
(인천) • 조사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제대로된 매뉴얼(조사관 선정기준, 조사관의 조사방법, 조사관의 보고서 작성법 등)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함.	(전북) • 전담조사관과 담당교사의 역할 명확히 구분(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 학교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전담조사관의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전담조사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법적 지위가 있어야 사안조사 전반을 맡길 수 있음)
(광주) • 1교 1조사관 제도로 정책 변경이 필요함. • 학교에서 다양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즉시적으로 사안에 개입하여 신속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책 변견이 필요함.	(전남) • 전남청 또한 자체적으로 조사 및 교원 노조와 협의 결과 사안조사 시 교원의 동석부분에서 빼는 방안과 학부모와 면담 일시를 잡을 때 조사관이 직접하는 방식이 학교 교사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으로 논의되었음
(대전) •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권한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타시도 및 지역교육청 간 공동학폭 발생 시 신속한 사안조사보고서 공유가 필요해 보임 • 전담조사관 도입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시한 2주(3주)가 촉박함. 20일 또는 3주(4주)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북) • 조사관 활동 관련 전국적인 기준 마련 (수당, 교육과정, 등), 표준화된 조사 매뉴얼 제공 • 학교(교사)와의 역할 명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정기적인 연수 추진 • 인력과 예산 확대, 전담조사관에 의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보완

(울산)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시 교원동석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학교폭력사안 초기에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제1차 사안조사 보고는 학교가 전적으로 교육부 양식에 따라 잘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이 추후 전담조사관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니 관련 업무에 대한 단위학교 안내 적극 필요(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활용이후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업무 자체에 대한 교육청 이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경남) • 교사의 업무 경감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이 있었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해 업무 경감을 하려면 모든 학교에 전담 조사관이 배치되어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일정 부분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세종)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반(상담 방법, 사안처리 절차,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수정 보완해야 할 점 등), 학교 지구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하여 업무담당자와의 래포 형성 및 원활한 업무 처리 지원	(제주) • 질문 4번 응답 동일
(경기)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학교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업무 경감은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감소'로 나타남. • 다만, 조사관의 개인 기량 차로 인해 조사보고서의 완결성이 다소 낮아 수차례 수정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성을 겸비한 조사관의 위촉 및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 • 제도 도입 이후 발생 된 업무 중 '전담조사관에게 학생의 특성, 사안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부담으로 꼽음. 조사관의 피·가해학생과의 라포 형성 및 소통역량을 강화 하여 학생의 특성에 대한 파악 및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	

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역할

교육부의 역할에 대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보수체계, 신분, 역할, 책임 등) 확립, 개략적인 매뉴얼이 아닌 통일성 있는 매뉴얼 필요(교원 동석 여부,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조사 수당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전담조사관 법적 지위(위촉직)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조사권 부여 그리고 제도의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었다.

(서울) • 조사관 신분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조사관의 사안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조사관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강원) • 필요한 법령 정비,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전담조사관 활용 매뉴얼 계발, 교육자료 제공 및 전문성 연수 실시
(부산) • 정책의 계획단계에서 업무담당자와의 협의 필요 •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므로 이후 진행과정에서 일방적인 하달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 교육부와 – 업무담당자의 협의 결과 반영 필요	(충북)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자체 조사와 전담조사관 조사로 병행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명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담조사관제도에 교육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
(대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관련된 예산을 다양한 방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17개 시도가 어느 정도 통일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 • 각 지역에 맞는 전담조사관 운영은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나,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보수체계, 신분, 역할, 책임 등)은 교육부에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상세한 의견은 상기 문항들을 참고바람.
(인천) •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수렴된 실제로 활용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어야 함. • => 자체예산으로 변경될 경우 전담조사관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움으로 특교배정이 필수적임.	(전북) • 개략적인 매뉴얼이 아닌 통일성 있는 지침 마련 필요(교원 동석 여부,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조사 수당 등) •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전담조사관 법적 지위(위촉직)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조사권 부여
(광주) • 조사관 전체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상시 온라인 연수를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함	(전남) • 현재 학교전담기구와 역할이 중첩되어 혼선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통일되지 않은 사안처리절차로 인해 교육청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시행령 또는 지침을 명확히 하셨으면 합니다.
(대전) • 전담조사관의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와 더불어 학기별 1회의 필수 온라인 연수 등 전담조사관 역량강화 방안 필요	(경북) • 제도의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학교 및 교육청, 전담조사관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표준화된 조사매뉴얼 제공 • 조사관 활동 관련 전국적인 기준 마련(수당, 교육과정 등)
(울산) • 전담조사관의 역량강화 및 질관리를 위해서도 지역별로 사례공유회의, 전국단위 연수를 정기적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음. • 전담조사관이 위촉되어 활용되더라도 위촉에 관련	(경남) •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지만 전담조사관들 지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 법률과 시행령상 관련 법조문이 명확할 필요가 있음. 제도 초기라 각 시도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나 관련 규정과 법조문 및 전국단위 연수나 매뉴얼 보급이 지속되지 않으면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제도가 될 수도 있음. 이미 전담기구 조사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각 시도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현실임. • 단위학교에서 직접 사안조사를 하지 않는 반면 관련학생의 보호와 관계회복에 힘쓰라고 제도의 취지를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적,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단위학교 학교폭력사안해결 역량이 급감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역량을 길러주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률조항(예)전담조사관 조사이후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관계회복을 결정하면 의무적으로 관련 절차를 거친다.)을 제정하고,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각 시도별로 다르겠지만 울산은 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출신의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가장 잘함. 사안조사보고서의 최종 사용처를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심의시 많은 관련학생을 대했기 때문인지 학부모 위원 출신조차도 학생에 대한 이해도와 사안조사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이 매우 높음. 관련보고서를 받아보는 교육지원청의 의견도 거의 비슷하니 추후 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세종) • 전담조사관의 정규직 전환 요구 등 제도가 지속 운영 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사전 대비 필요 • 전담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실시(연 2회 이상) •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수정·보완	(제주) • 법률 개선 지원
(경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조사관의 활동 보호 규정 신설 필요, 조사관의 업무 수행, 위촉 및 해촉 기준 제시 필요 • 표준화된 조사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중앙단위 연수 자료 개발 및 배포 필요	

10)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유형 분류(안)에 대해 수정 의견이나 추가 의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유형 분류(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유형 분류
1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고등학교 사안 중 학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저학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안은 해당학교 소속교원이 조사
2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폭력 관련 양측(학생 및 보호자)이 모두 요구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
3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 폭력 관련 양측의 동의여부 관계없이 학교 측에서 사안을 고려하여 소속교원이 조사할지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할지 일방적으로 결정
4	모든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
5	모든 사안에 대해 기존처럼 학교에서 조사
6	성폭력(경찰 수사시 제외),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 발생한 폭력, 교사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만 실시

6가지 유형에 대한 수정 의견이나 추가 의견 요청과 관련하여, 다수는 6가지 유형 중 3번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 폭력 관련 양측의 동의 여부 관계없이 학교 측에서 사안을 고려하여 소속교원이 조사할지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할지 일방적으로 결정'을 선호하였다. 다만 '경미한'의 정확한 한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일방적으로 결정'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완화된 표현으로 '학교가 결정'으로 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교원 업무 경감,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 향상과 민원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속적 시행에 찬성이나 역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담조사관의 선발 조사 권한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명시, 전담조사관제 교육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학교 자체 조사와 전담조사관 조사의 영역 명시, 교사의 권위 상승 및 전담조사관의 역량 제고(연수, 워크숍 등의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봉사직, '위촉직'이 아닌 공무직 형태의 조사관 제도 변경) 등이었으며 무엇보다 정확한 매뉴얼 개발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사안조사학교요청제' 도입 등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1) 서울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초등 저학년일수록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사관 수요가 많음	
2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음	
3	가장 현실적인 유형임	
4	학교의 생활교육 역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5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청의 조사관 지원이 일부 필요함	
6	학교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음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서울의 경우 3번 유형을 적용하여 2024년 운영하였으며, 학교 만족도와 교육지원청 만족도가 높음		

(2) 부산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동의함
2	전담조사관을 요구하는 쪽은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 전담조사관을 요구하지 않는 쪽은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	
3 4 5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원칙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학교에서 조사 가능	
6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3) 대구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2		
3	경미한 사안이라도 민원 강도가 큰 사안일 수도 있고, 조사는 피기해 관련 학생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교가 사안을 판단하여 전담조사관 배정유무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3번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5		
6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4) 인천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수정〉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전담조사관 미배정에 모두 동의할 경우 해당학교 소속교원이 조사	경미함의 기준이 모호함. 저학년과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교원에게만 업무가 가중됨.
2	〈수정〉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관련학생 중 한쪽(피해 또는 가해)이라도 요구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한 경우에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	전담조사관 배정을 기본으로 한다면 어느 한쪽이라도 요구할 경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여야함.
3	〈삭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4	〈보완 필요〉	예외기준이 필요함
5	〈보완 필요〉	예외기준이 필요함
6	〈수정〉 성폭력, 관련 학생이 다수인 폭력, 상해 정도가 큰 폭력 등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 (교사에 의한 폭력은 아동학대 사안으로 처리됨으로 제외)	예산문제가 발생한다면 객관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에만 조사관 이 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짐.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학교 담당자가 병가나 출장 등으로 부재하여 전담기구에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		

(5) 광주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함	
4	부동의	사안의 경중,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5	부동의	변경시 학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6	부동의	사안의 경중,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1교 1조사관 배치 건의함, 특정 유형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대전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2	그럴 경우 학교 교사가 사안조사의 부담을 다시 가질 수 있음	
3		
4		
5		
6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사안조사를 학교 업무담당교사가 하거나 전담조사관이 하는것은 학교에서 판단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안조사 방식은 직접 방문이 원칙이나 서면(성사안, 민감한 사안)과 유선으로 조사가 가능 하도록 매뉴얼 제시하면 좋을 듯.

(7) 울산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고등학교 사안 중 학교장이 경미(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저학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안은 해당학교 소속교원이 조사	삽입 필요
2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학교폭력 관련 양 피·가해측(학생 및 보호자)이 모두 요구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양 피·가해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	삽입·삭제·수정 필요
3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 폭력 관련 양측의 동의여부 관계없이 학교 측에서 사안을 고려하여 소속교원이 조사할지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할지 일방적으로 결정	삭제필요. 수정시(경미한 사안인지 여부, 폭력 관련 양측의 동의 여부 등 관계없이)
4	의견 없음	좌동
5	모든 사안에 대해 2024.2.28. 이전처럼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	수정필요
6	성폭력(경찰 수사시 제외),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 발생한 폭력, 교사에 의한 폭력 등에 대해서만 실시	경찰 수사시에도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필요함.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8) 세종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초등학교 고학년을 초등학교로 수정하고, 아래 초등학교 저학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삭제	초등 저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사안조사에 대해 더 민감한 경우가 많아 해당학교 교사보다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다만, 저학생, 특수교육 학생의 조사 시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돌발상황 대응을 위해 교사 동석 필수
2	없음	
3	'일방적으로 결정'을 학교가 결정으로 수정	'일방적'이라는 어휘가 주는 뉘앙스가 부정적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음
4		
5	'기존처럼' 삭제	불필요
6	'실시'를 전담조사관이 조사로 수정	다른 유형 말미에 표기한 것과 통일 필요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9) 경기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학교요청제 도입) 학교(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관이 조사하는 '사안조사 학교요청제' 도입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내실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조사」설문 (2024.8.28.~9.6. 1,630명 참여)
2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 피해학생 보호, 관련학생 간 관계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소속교원·전담기구에서 조사 가능	
3	피·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희망, 사안내용, 학생특성, 관계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폭력전담기구 협의를 통해 판단 ※ 관련학생, 보호자의 요청 시 조사관 배정, 의사 확인 구분, 의사 확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 필요	
4	(학교요청제 도입) 학교(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관이 조사하는 '사안조사 학교요청제' 도입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5	(학교요청제 도입) 학교(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관이 조사하는 '사안조사 학교요청제' 도입	
6	피·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희망, 사안내용, 학생특성, 관계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폭력전담기구 협의를 통해 사안조사 방법 판단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변경 필요(사안조사: (학교)전담기구, (학교폭력제로센터)전담조사관		

(10) 강원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2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폭력 관련 한쪽(학생 및 보호자)이 요구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한쪽만 동의한 경우에는 원하는 쪽만 전담조사관이 조사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한쪽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모두 박탈하는 것은 자기벙어와 관련한 상위법령에 어긋난다고 보여짐.
3	학교 측에서 사안을 고려하여 소속교원이 조사할지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할지 학부모 및 학생의 동의를 거쳐 결정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 존중 필요
4		
5		
6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11) 충북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고등학교 사안 중 학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저학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안은 해당학교 소속교원이 조사 할 수 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2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폭력 관련 양측(학생 및 보호자) 중 한쪽이라도 요구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관련자 중 누구라도 동의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	학교 측의 제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학교에 대해 중재의 소극성을 탓할 수 있음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3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 시 그 조사결과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 축소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4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짐	
5	이미 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교가 많음. 제도 폐기시 담당교원은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느낄 것임	
6	학교폭력사안 유형 중 성폭력, 학교간 폭력의 비중은 높지 않음 따라서 업무경감 효과가 높지 않음. 교사에 의한 폭력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리 됨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12) 충남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2	"양측"을 "파가해 양측"으로 수정	지문 명확화
3	"관계없이 ~ 결정"을 "학교 측에서 조사방법(소속교원 조사 또는 전담조사관 조사)을 일방적으로 결정"으로 수정	지문 간결화
4		
5		
6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13) 전북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부분 동의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담조사관 배정)	
2	비동의 (A측 요청, B측 미요청인 경우 A측 요청에 따라 전담조사관은 배정하되, B측에서 전담조사관 조사를 원치 않을 시 B측은 학교에서 조사 실시)	
3	비동의 (전담조사관 배정 여부는 사안의 특성과 담당교사 의견을 고려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하여야 하나, 해당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 관련 의견이 전제되어야 함)	
4	비동의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사안의 특성, 학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담조사관 배정 여부 결정)	
5		
6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담조사관 배정 기준 ▸교육부 방침은 모든 사안에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종전대로 전담기구 등을 활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조사를 할 수 있음 ① 단,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 조사관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반드시 전담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②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 조사관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 협의 후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할 수 있음		

(14) 전남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경미란 단어가 주는 모호성이 많음, 초등학교 저학년(1~3)은 해당학교에서 조사	
2	학교측 및 책임교사의 업무만 과중하게 되는 내용임, 또한 학교가 본인의 역할을 안하려고 하는 행태로 보여질 우려가 있음	
3	경미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학교전담기구가 판단하고 전담기구에 요청한 경우에 한해 조사관을 배정	전남청 학생부장 설문조사에도 모든 학생부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었음
4		전남청에서 조사한 2번째로 선호유형
5	법령을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학교가 많음	
6	법령을 바꿔야 함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15) 경북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만 소속 교원	
2	전면 도입에 비해 교원 업무 경감이 축소	
3	'경미한' 에 대한 명확안 기준, 예시가 필요	
4	경미한 사안 또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조사관 투입에 대한 판단 필요	
5	개선 필요	
6	조사관 제도 도입의 의미 감소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해당없음		

(16) 경남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2		
3	학교장은 사안의 특성, 관련 학생,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담 조사관의 배정 요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단 전담 조사관 배정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하여 처리함.	
4		
5		
6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17) 제주

유형	수정이나 추가 의견 내용	비고 (자문 의견 사유 등)
1	학교폭력 신고사안은 관련학생(피·가해)의 선택에 의한 사안조사(학교장이 지정한 소속교원 또는 조사관)를 시행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다양성이 존재함.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 조차 피해학생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 관련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 해야함.
2		
3		
4		
5		
6		
추가나 삭제 유형 등 기타 의견: 다만, 성폭력 사안은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사항임으로 학생들의 진술을 경찰, 유관기관(해바라기센터), 학교폭력 조사 등 여러번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성폭력사안은 경찰 조사한 내용을 본인이 받은 후 조사자(학교장이 지정한 소속교원 또는 조사관) 제출하면 학교폭력 조사를 생략하여 피해학생을 지원할 수 있음.		

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의견 수렴 및 시사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참여 경험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첫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으로 장애학생 조사, 학생의 진술 거부, 비협조 및 방해(거짓말, 핸드폰 미제출 등), 일정 조정, 사안 조사 시설 및 환경(CCTV, 면담실 등), 조사 과정에서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등을 들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조사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상담을 통해 또는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이 되었을 때, 책임교사의 친절한 응대, 사안을 전담조사관으로 투입되어 원만히 처리했을 때, 피·가해 관련 학생을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좋음, 학교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고,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민원이 현저히 줄어듦으로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에 기여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조사 등의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와 같은 조사관보호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조사관의 책임(업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등 포함), 업무 사항, 그리고 면책 사항 규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과 권한이 규정된 법적 근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접근권(다풀림톡, 나이스), 사건 처리 후에도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철저한 신변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담조사관 위촉 기간 연장 또는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 등 조사관의 신분 보장, 조사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서 소송을 당하였을 때 대비 보험 가입 또는 변호인 조력 보장, 조사관의 업무수행 중 사고 당할 경우 대비 상해 보험 가입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넷째,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법률 지식 및 상담 기법의 전문화, 학교폭력 신고 접수 관련 “사전 심의 단계” 신설, 학교장이 판단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화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 미 접수 허용, 교육의 외주화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법적 수사관이 아닌 교육적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역할과 기능 보완, 사안 조사 초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화해 중재에 적극 개입하여 조기에 문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조사관과 회복지원단의 융합,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업무담당자 배치로 학교폭력 발생 시부터 심의위원회 운영, 불복절차까지 일원화 대응, 각 학교에 학교폭력전담인력(가칭 '전담실무사')이 배치되어 학교폭력(사안조사포함), 생활교육위원회, 교육활동보호 등의 행정업무를 일원화, 즉 SPO처럼 지역별, 학교별 책임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시도교육청의 역할로 전담 조사관들 사기 진작 및 교육을 위한 연수 강화, 조사 환경 (노트북 활용, 조사실 등) 개선, 회복적 갈등 조정 업무를 포함한 조사관 역할의 유연성 있는 확대 등을 요구하였고,

여섯째, 교육부의 역할로 조사관의 법적 지위 보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책임(업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등 포함), 업무 사항, 그리고 면책 사항 명시, 학교별 전담조사관 배치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학교 업무 경감,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피· 가해 관련 학생의 동의)에 대해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없이 학교 전담 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전담기구 처리 가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 배치 배제, 회복적 지원이 가능한 경우 신청 허용, 늘봄 실무사처럼 학교폭력업무 실무사 각 학교 배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업무 경감 취지에 부합하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면담 조사 시 업무 담당자 미 동석 명문화,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언급하였다.

1)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참여한 건수(파악된 경우에만 응답)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참여 건수 중 가장 많은 참여 건수는 90건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건수는 21건으로 나타났으며, 20명의 전체 사안 조사에 참여한 건수는 826건으로 나타났다.

전담조사관(인천) 59건	전담조사관(인천) 40건
전담조사관(대전) 46건	전담조사관(대전) 46건
전담조사관(부산) 28건	전담조사관(부산) 27건
전담조사관(전남) 90건	전담조사관(전남) 30건
전담조사관(울산) 26건	전담조사관(울산) 44건
전담조사관(전북) 21건	전담조사관(전북) 25건
전담조사관(경기) 43건	전담조사관(경기) 50건
전담조사관(충북) 42건	전담조사관(충북) 42건
전담조사관(제주) 48건	전담조사관(제주) 49건
전담조사관(경북) 30건	전담조사관(경북) 40건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전담조사관들은 장애학생 조사, 학생의 진술 거부, 비협조 및 방해(거짓말, 핸드폰 미제출 등), 일정 조정, 사안 조사 시설 및 환경(CCTV, 면담실 등), 조사 과정에서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등을 들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담조사관(인천) • 피해 관련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진술이 불가능하여 특수교육담당선생님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쓴 목격자 확인서와 가해관련학생들의 확인서는 대략적인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전담조사관(인천)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① 보호자(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의견보다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관철하려고 주장할 때 ② 피해/가해(관련) 학생들이 3~4개 학교 학생으로 관련되었을 때, 책임교사들의 본인 학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에 직접 질문 등 관여
전담조사관(대전) • 학생 및 보호자와 면담 일정 조정의 어려움으로 기간 내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 교육청으로부터 사안 조사 의뢰 후 학교 측과 학생 면담 일정 조정에서 학교의 학사일정, 학생 개인 사정(학원, 가정체험학습 등), 보호자	전담조사관(대전) •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CCTV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고, 대부분 관련학생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관련학생 면담실이 확보되지 않아 교실 등에서 면

의 일정 등으로 사안 조사가 늦어져 사안 처리의 기간(3~4주)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공동 사안일 때 더욱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최초 사안 접수 후 2~3일 이내 사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 교의 협조가 요구됨 • 학생 면담 시 학생의 진술 거부 - 사안 조사 시 학생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때 진술을 강요할 수 없어 사안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진술을 유도할 질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안 조사의 한계가 있음 • 1차 학생 면담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 상대 학생에게 확인하려면 2차 사안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피 · 가해 학생 면담 일정이 같은 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 경우 학생이 2차 면담 부담으로 면담을 기피하여 정확한 사안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이 경우는 전화로 학생 면담을 대신하였으나 전화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음 • 가해 학생이 사안 조사 면담에 응하지 않을 때 면담을 강제할 수 없어 전체적인 사안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 경우 전화 면담, 이메일 서면 면담으로 문제해결 • 사이버 폭력(SNS)의 경우 사안 관련 근거자료(핸드폰)를 학생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근거자료(핸드폰)를 확인할 수 없어 사안 조사의 한계가 있었음	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안 조사때마다 면담실이 바뀌는 등 관련학생들의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면담 분위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남자 조사관으로서 면담 대상 학생이 여학생이고 보호자 없이 면담할 경우 출입문을 열어 놓고 면담을 진행하다보면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쳐다 봐 관련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전용 면담실과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 관련학생 면담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급적 보호자 입회하에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호자의 지나친 개입으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강한 처분 요구로 학생 중심의 문제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책임교사 입회관련하여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전담조사관(부산) • 학교 방문하여 조사하려고 시간을 조정하면, 학원 시간 등으로 인하여 조사관이 원하는 순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몇 일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현실임. 조사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먼저 조사하여야 할 대상이 있고, 뒤에 조사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의 방과후 시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에 공간이 부족하여서 관련학생들이 안정되게 조사받을 수 없는 방송실이나 공개된 교무실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피해관련학생이 정상적으로 조사를 잘 받고 난 뒤에, 자신의 진술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서 강압적으로 조사	전담조사관(부산) • 특별히 어려웠든 점은 없으나 학생사안조사 메일 확인시 원본이 아니라 학생 글자등이 희미하여 사전파악에 어려웠고 학교별로 조사실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를 받았다고 하소연하여, 담당교사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난감하였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자, 담당교사는 알겠다고는 하지만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웠음. • 성사안 피해관련여학생이 신고하였으나, 조사하면서 피해가 아닌 것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게 되자, 여학생이 보호자에게 강압적으로 조사했다고 하고, 보호자는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전담조사관에게 녹음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담당 조사관이 곤혹을 치른 일이 있음. • 학교 담당교사가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전담 조사관이 정상적으로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교에 따라서는 사안이 일어나면 거의 전적으로 조사관에게 넘기는 경우가 잦음.	
전담조사관(전남) • 조사관이 학교 소속이 아니고 학생 학부모와 안면이 없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있어 사건마다 이런 상황을 갖게되는 것, 사안조사를 해야하는데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할 때 말을 끝고 조사를 이어 나가기가 어려움.	전담조사관(전남) • 초등학생: 원활한 의사소통(담당교사 임장 필요) • 중·고등학생: 사안조사에 비 협조적이며 거짓말
전담조사관(울산) • 피·가해(관련)학생 및 보호자들과의 조사일정 약속의 부분에 있어 간혹 보호자들이 '학생들의 수업시간은 침범해서는 안된다, 조사관련하여 보호자 본인의 업무시간 조율이 힘들다' 등의 이유로 '조사를 점심시간 안에 끝내달라, 학교 수업이 모두 마친 이후로 진행해달라' 요구하는 부분이 있음. 하나의 사안을 조사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조사하여야 할 인원이 많아 (대다수 사안의 경우 최소 2명이상의 조사가 일어나며, 평균적으로 1명의 학생을 조사하는 시간에 1시간 가량은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1명 조사에 3시간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보호자들에게 조사시간을 앞당기는것에 양해를 구하나 이를 거절하고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보호자들로 인해 전체적인 사안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전담조사관(울산) • 우선, 학교폭력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진실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여러 차례 방문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학생들이 두려움, 보복에 대한 우려, 친구를 보호하려는 심리 등으로 인해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협조를 얻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와의 갈등도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술과 본인의 관점에 따라 사건을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학교나 조사관의 중립성을 의심하거나 조사 결과에 반발하기도 합니다. 간혹, 비협조적인 학교 책임교사에게는 협조(정보공유, 장소, 프린트, 냉난방, 물 등)를 요청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 조사관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된 정보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압박감을 늘 느낍니다.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은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더불어,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조사관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권한 또한 제한적이며, 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느낍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피해추정학생 면담 조사 후 가해추정학생 면담 조사 시 너무나 엇갈린 주장으로 인한 추가 조사 발생으로 해당 학교 재방문하여 면담 조사한 점이고, 가해추정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때나, 무조건 부정할 때 힘들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이 여러 학교가 연관되어 있을 때 또 다른 조사관과 협조하여 면담 조사하는데, 조사관마다 조사 스타일이 달라 한명이 면담조사할때보다 사안조사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가해 추정 학생을 조사할 때 아버지께서 동석하셔서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실 때.
전담조사관(경기) • 가·피해 관련 학생의 상반된 주장 검증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 동석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학생의 진술 신뢰성 여부	전담조사관(경기) • 저는 추가 위촉이 되어 첫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조사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학기 초반에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혼란스러웠던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책자를 일일이 찾아가며 진행하거나 장학사님, 주변 조사관님에게 물어가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초반에는 어려웠지만 추후에는 물어보고 찾아봤던 일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학사님께 문의하며 진행해야 했던 점입니다. 케이스마다 대처 방법이 다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연수에서 받게 된 학교폭력 Q&A 책자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담 시 사건의 민감성과 학생과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진술 확보 및 신뢰성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면담을 하는 도중 옆에 있기를 희망하며 “왜 2차 가해를 하느냐? 학생확인서에 작성하였는데 왜 또 물어보느냐?”라고 하신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학생확인서는 중1 피해관련학생 보호자가 작성을 한 상태여서 쟁점이 많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가해관련학생이 7명이였는데 각 학생별로 피해사실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피해관련보호자의 거센 항의에 쟁점에 대한 부분을 더 묻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쟁점이 20개 정도 되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전담조사관(충북) • 학생 조사시 학부모가 동석하면 부모의 의지대로 학생이 진술하거나 거짓진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특히 증거관계가 없을 때). 보호자 동석을 배제할 근거가 없음.(동석 배제 시 민원제기 우려) • 학교에서 학생을 안정된 상황에서 조사할 수 있는 공간확보 미흡(조사하고 있는데 학생 또는 학교관계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음) • 학교측과 소통 미흡(학교 측에서 조사관과 적극적 소통을 하기보다는 조사관은 별개의 조사 일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줌	전담조사관(충북) • 가해행위가 반복된 학생들은 잘못에 대한 문제의식이부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적사항조차도 마음을 닫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에서 공정성 중점을 두는 조사를 진행한 관계로 잘못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 해도 훈계할 수 없다는게 애로 사항임.
전담조사관(제주) • 대부분의 학교는 조사하기에 적절한 상담실, 복지실, 빈 교실 등 조사 장소의 제공이 이루어졌으나, 간혹 학교 시설의 미비 또는 장소 섭외 미숙으로 적절한 장소가 제공되지 않아 조사를 받는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까 전담 조사관으로서 신경이 많이 쓰였음.	전담조사관(제주) • 목격학생 조사 - 목격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목격한 내용이 상반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격학생이 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격학생이 담당교사와 조사관에게 한 진술이 달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 진술이 다른 경우, 조사관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 학생이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경우 - ADHD가 있는 경우,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진술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 불안이 있는 경우, 무기력하게 조사에 참여하고, 조사 과정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거나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진술한 내용을 기초로 사안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경우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할 때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 학부모가 비협조적인 경우 -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학생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해결해달라 할 때 난감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 2차 확인서 작성을 힘들어하고, 길게 쓰는 걸 힘들어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 못쓰고, 너무 단순하게만 적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사관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담조사관(경북) • 일부 학교의 해당 사안에 대한 기초 조사 미비(피해 · 가해학생의 최초학생작성확인서 부실 또는 미비, 학부모확인서 미비, 목격자 진술서 미비 등)	전담조사관(경북) • 사안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쌍방 신고했을 때('정황증거' 도 없어도 난감하고 안타까움이 큼) • 2인 이상 조사관 조사시, 동행한 조사관이 매뉴얼

로 인한 사안 조사 혼선과 보호자의 항의 및 과잉 진술도 있었음. • 언어폭력의 경우 진술이 서로 상반되거나 가해학생이 회피하는 진술이 많아 판단하기 어려워 목격자 진술이나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때가 많음. 그런데 진술 과정에서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학교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비협조적일 때가 있음. 미리 증거자료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학교도 있음. • 조사 장소의 경우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공간이 많았음.(넓고 개방된 회의실, 조사 중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인 동아리실, 조사 중 충돌이 생기는 민원면담실 등) • 약 30건의 사안 조사 중 수업 시간에 실시한 경우가 80%이며, 정규 수업 후 조사는 20% 정도임. 이때 수업시간 중 조사할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책임교사에게 확인할 수 밖에 없음. 관리자와 만난 경우는 몇 건에 불과함 • 목격자 면담에서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인 경우 학교에 요청하기가 어려움.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진술 시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책임교사나 담임교사가 필히 참석할 필요가 있음. • 특목고를 비롯한 고등학교 조사 시에 방과후수업이 끝나고 이루어짐으로써 밤늦게 익일까지 조사할 때도 있음.	에 충실하지 않아서 조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을 때 • (동료조사관의견)남자조사관의 경우 여학생들이 예민한 반응(널뛰는 감정기복 등)을 보일때 • 개인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어렵구나” 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음. 생각보다 담당교사가 협조적이였고, 교육청 담당자도 신속한 편이였음. 조사대상(피해 및 가해)의 경우 첫 대면이 잘 이루어지면 진술을 받는데 어렵지 않았음. 무엇보다 조사관이 학폭유무를 판단 하는 역할이 아니기에 부담감이 크지 않음. 다만 조사장소가 변경을 요청할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있었음.

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조사하면서 좋았던 점

조사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상담을 통해 또는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이 되었을 때, 책임교사의 친절한 응대, 사안을 전담조사관으로 투입되어 원만히 처리했을 때, 피·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공정한 대응, 학교업무 담당자의 어려움 해소, 학부모의 민원 감소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에 기여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조사 등의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담조사관(인천) • 조사를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몹시 긴장하고 경계하는 태도로 만나지만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거나 진정한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피드백에서 '이 일을 하기 잘했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담조사관(인천) • 학생들과 처음에는 어색한 대화를 하면서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었을 때 마음을 열고 진술할 때 • 보호자와 학교에 말하지 않은 내용을 진솔하게 말하여 주었을 때 •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이 되었을 때
전담조사관(대전) • 피 · 가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에 직면하여 당황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사안 조사와 별도로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안내하여 문제가 해결된 경우 – 사안이 종결된 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 소통을 통하여 피해 학생 트라우마 해소에 도움을 준 일이 기억에 남음 〈피해 학생의 여러 요구 중 가해 학생의 조치(서면사과)가 피해 학생에게 전달되지 않아 피해 학생의 응보적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로 등교를 거부하여 교육지원청, 학교에 연락하고 보호자와 상담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 해소에 노력한 결과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등교를 하게 되었음〉 • 학교폭력(위촉받은 사안)에 관련하여 학교 측에 민원이 있었을 때 사안 조사 과정에서 면담과 상담을 통해 학교 민원을 해결하여 학교를 도와준 경우	전담조사관(대전) • 관련학생 및 보호자 면담 시 보호자 요청에 의해 조사관 입회하에 가해관련 학생이 사과문을 읽어주고 상대방이 진심이 느껴진다면 사과를 받아들여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조사관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 학교 방문하였을 경우 책임교사의 친절한 응대와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의 눈치 보지 않고 사안 조사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전담조사관(부산) • 학교폭력 조사를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하지 않아서 좋았음. 피해관련학생과 가해관련학생에게 상황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서에 쓰도록 하고, 쓴 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어서 학생들과 갈등을 만들 이유가 없게 되었음. 단 학교에서의 접수보고서와 확인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예상 질문을 만들어 가고, 예상 외의 질문에 대비하여 질문이 씌어지지 않은 확인서를 준비해가면 자신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피·가해관련학생을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좋음.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억울한 면을 언급할 수 없는 점이 있음. 피해학생은 무조건 피해만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점을 깨트릴 수있	전담조사관(부산) • 학생별 심각한 사안도 있었고 사소한 사안도 있었으나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을 전담조사관으로 투입되어 원만히 처리했을 때 보람을 느꼈고 좋았습니다.

었음. • 이런 점에서 가해관련학생에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된다고 말하면,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음. • 피해관련학생의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가 100% 피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해관련학생들에게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종전의 학교의 책임교사가 담당할 때 전혀 할 없었던 일이었는데 가능하게 되었음. 실제 피해관련학생의 부모에게 자녀의 힘든 점을 말하면서, 자체해결제로 귀결되었을 때 학교에서 너무 고마워했음. • 담당 선생님께 피해관련학생의 보호자가 괴롭히면 모든 것은 전담 조사관이 알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전담 조사관을 면담하라고 말을 전하면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음. 그리고 담당 교사에게 절대로 전담 조사관의 전화번호는 주지 말고, 대면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하라고 하였음.	
전담조사관(전남) • 2019년부터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켜봤을 때 전담조사관제를 통해 학교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고,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민원이 현저히 줄어듬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좋았음.	전담조사관(전남) • 사안조사의 전문성으로 담당교사, 담임교사의 무한한 신뢰 • 전문성없는 사안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제거
전담조사관(울산) • 학교폭력을 정의하는 것에 무겁고 가벼움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주로 발생하는 학생간의 단순 갈등에 관한 내용 등에 있어 조사과정에서 양측의 보호자와 학생들을 잘 이해시켜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화해중재를 통하여 학교장 자체해결로 학생들의 원활한 교우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평소 말썽꾸러기라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이 해당학생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하는 사안들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오해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적극 이해시켜 학폭사안신고가 취소 되는 등의 내용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존재에 대한 제도적인 이유가 사법절차와 같은 처벌이 아닌 학생들간의 반성과 용서를 통한 올바른 성장과정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는것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음	전담조사관(울산)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성취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데, 피해 학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 행동을 예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조사관으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학교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학교 내 신뢰와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학부모와 교사에게 신뢰받는 조사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조사 후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 작더라도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임하고 있으며 과정들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피해 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도 큰 보람이 됩니다. •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명감도 느낍니다. 사건을 해결하며,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에 힘쓰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역할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심리학, 법률, 상담 기술 등을 익히고 조사관으로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책 개발이나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에게 조사관에 대한 인식이, 자신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믿음을 주는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가·피해추정학생 면담 조사 시 관련학생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마찰 없이 면담 조사가 원만히 이루진 점 • 가·피해추정학생 면담 조사 시 학교 방문 때 학교 업무 담당교사의 친절함과 협조	전담조사관(전북)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목적은 사실 확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가해 추정 학생이든 피해 추정 학생이든 결과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때 보람도 느끼고 좋았다.
전담조사관(경기) • 학폭 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여 •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일조	전담조사관(경기) • 10년간 학교폭력 예방 강사로 활동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였으나, 구체적인 사례나 동향을 알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조사관을 하면서 학년별로 많이 발생되는 학교폭력사례와 동향을 알 수 있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사안을 공정하게 다루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보람이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 학교폭력 법적·제도적 지식과 조정 능력이 향상된 점이 좋았습니다.
전담조사관(충북) • 학교 선생님이 조사관제도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경감되고 악성민원 부담감이 해소되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때.(A교사는 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하기 전에는 책임감이 컸고 편파적으로 조사했다는 학부모 조사이의제기가 많았고, 학교측이 공격을 많이	전담조사관(충북) • 전문지식의 습득 및 학생들 문화 공감, 다양한 법률지식과 조사기법 함양을 위한 법률서적,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서적을 접하였습니다. 또한 신세대 학생들의 문화를 미리파악하고 조사에 임하여 학생들의 문화를 공감 할 수

받았는데 조사관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학폭조사 부담감이 감소되어 심적으로 편하고 업무경감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함. 조사업무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면 학폭담당을 안할 교사가 많을 것이라고 말함) • 특히 피해관련 학생이 조사관을 신뢰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을 때 • 피해 또는 가해 관련 학부모가 잔뜩 화가 나 화해로 문제 해결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대면하여 상담한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 졌다고 하면서 누그러져서 감사하다고 할 때	있었던게 자아발전을 위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담조사관(제주) • 학교폭력 전담 교사의 조사 과정 중 생기는 공정성의 문제로 발생하는 학부모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퇴직 교원 전담조사관으로서 교사의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음. • 학교폭력 관련 사안 조사 시, 학생 보호자가 참관하면서 전담 조사관의 조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주어서 나름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하고 있음.	전담조사관(제주) • 담당교사 및 학부모가 조사에 대해 신뢰를 해주고, 만족했을 때입니다.
전담조사관(경북) • 피해학생이 학교나 교사, 학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 하면서 어느 누구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자살까지도 시도하려 했었는데, 조사를 통해 후련해졌다고 할 때 가장 뿌듯했음. •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면서 울 때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음. • 경청하는 자세를 배웠음. • 교원들의 학교 폭력 업무 경감을 했다고 느꼈을 때 • 학교의 조사 미비에 비해 사안의 피해 가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였을 때	전담조사관(경북) • 조사 전에 피해(관련)학생에게는 “신고를 하게 된 계기”, 가해(관련)학생에게는 “신고를 당하게 된 이유” 에 대해 물어보는 편임. 조사가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앞의 질문을 다시 하면 학생들의 감정과 생각이 바뀌면서 피해(관련)학생은 두려움과 치욕감 등의 감정이 감소 되고, 가해(관련)학생은 억울함이 줄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면서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낌.

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교권보호위원회와 같은 조사관보호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조사관의 책임, 업무 사항이나 면책 사항 규정 등,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제반 역할과 권한의 법적 근거,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접근권, 사안 처리 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신변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담조사관 위촉 기간 연장 등 조사관의 신분 보장, 조사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소송에 대비 보험 가입, 조사관 업무수행중 사고 발생

을 대비 상해 보험 가입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전담조사관(인천) • 현재는 조사에 동석하는 관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억울한 민원을 당해도 조사관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는 일(장학사에게 민폐)이다 보니 그냥 웃어 넘긴다고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조사관보호위원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의 업무 수행 중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사와 동등한 위치의 조사관 신분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책이 교육청에 상주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에 관련된 의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파견 조사관이 필요합니다.	전담조사관(인천) • 현재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1.시행) 제8조 제2항(전담부서의구성 등)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조사관의 위촉(임명)과 해촉 - 조사관 임명·위촉권자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상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교 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 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한다(시행령 제8조 제3항) 2024년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 북(교육부)에는 ▶ 조사관의 역할 • 학교 폭력 사안 조사 - 학교 폭력 제로 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 폭력 피·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다. - 관련 학생 보호자와 면담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 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 면담 과정에서 자체 해결 동의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조사관이 학교에 전달할 수 있음. 필요시, 관련 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 보고 신고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담 기구 및 제로 센터에 보고한다. ※ 학교장 요청 시 전담 기구에 참여하여 조사 결과 보고 • 사례 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사례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조사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에 자문 요청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 폭력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조사관의 책임(업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등 포함), 업무 사항, 그리고 면책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조사관(대전)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과 권한이 규정된 법적 근거가 요구됨 –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요청, 자료 수집 등에 관한 권한 보장 – 조사 과정에 발생한 문제로부터 보호(고의가 아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	전담조사관(대전) • 현재 전담조사관 위촉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으로 연장 또는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을경우 자동 연장으로 조사관의 신분 보장으로 조사관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사관이 정당한 업무 수행하다 소송을 당하였을 때 대비 보험 가입 또는 변호인 조력 보장 • 조사관의 업무수행중 사고 당할 경우 대비 상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조사관(부산) • 의견 없음	전담조사관(부산) • 아직 접해보진 않았으나 학생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을 대상으로 피·가해 학부모들로부터 법적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전담 법률전문가를 즉시 도움 줄 수 있는 제도가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담조사관(전남) •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전담조사관(전남) • 사안조사시 피해관련학생 학부모에게 화해조정의사 타진시 발생 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전담조사관(울산) • 조사관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상의 조항 • 조사와 관련한 조사관의 업무 범위, 활동 가능한 내용 등에 관한 매뉴얼	전담조사관(울산)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민감하고 갈등이 많은 사안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법적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사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관의 역할과 권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비한 명문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보복 위협이나 신변 안전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신변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개인 전화기, 투넘버)가 필요합니다. 조사관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변호사 지원이나 소송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관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상담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복지 혜택을 보장해 업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갖추고 책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접근권(다풀림 톡, 나이스)과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사건 처리 후에도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방안

	은 조사관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법적 권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변호사 선임이라고 생각한다.
전담조사관(경기) •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부모의 무리한 아동학대 혐의 추궁에 조사관의 안전을 보호하는 전담조사관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전담조사관(경기) • 조사관이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담조사관(충북) • 학폭조사 업무는 공적인 업무 성격이나 조사관 신분은 1년 위촉직으로 선발하고 있어 신분에 따른 역할과 임무만 부여되고 권한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관이 업무 수행과정중에 또는 사안 관련하여 학생과 보호자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최저 임금의 보장이 현실화 되면 사명감과 자긍심이 클 것으로 보임.	전담조사관(충북) • 공적인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면서 현재 1년 위촉직으로 선발 하고 있고 신분적 지위도 위촉직입니다. 조사관 업무 수행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과 법률분쟁 발생이 공무인가? 아닌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업무영역에 맞는 법적 지위가 필요함.
전담조사관(제주) • 현재까지 본인은 민원을 받은 적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보호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보호해 줄 교권보호위원회와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함.	전담조사관(제주) • 조사관의 조사 업무에 대한 방해, 폭언, 인권침해 등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조사관(경북) • 수업 시간 중 조사할 때 관련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서와 학교장 허가서가 필요함. -- 이는 학교 책임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민원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사안조사보고서를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공개하였을 경우 항의 전화나 소송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이 필요함. • 조사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교통사고)에 대한 일일보험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함. • 조사 시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대한 보호 조치나 방안 강구가 필요함.	전담조사관(경북) • 학교 내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고 보며, 무엇보다 매뉴얼(전문성과 공정함)에 충실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민원 제기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함. 다만, 조사관의 개인정보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함.

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법률 지식 및 상담 기법의 전문화, 학교폭력 신고 접수 관련 "사전 심의 단계" 신설, 경미하거나 화해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학교장 판단하에 사안 미접수 허용, 사법적 수사관이 아닌 교육적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역할과 기능 보완, 사안 조사 초기부터 전담 조사관의 화해 중재 등 적극적 개입 가능성 인정, 조사관과 회복지원단의 협력,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업무담당자를 배치하여 절차적 일원화 대응, 각 학교에 학교폭력전담인력(가칭 '전담실무사')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물론 제반 행정업무를 일원화함으로 SPO처럼 지역별, 학교별 책임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전담조사관(인천) • 조사관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창구와 지원입니다.	전담조사관(인천) • 현재 업무는 학교 폭력이 접수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순번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배정하여 독자적으로 학교에 방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 보호자들의 자녀들의 보호 본능으로 인한 적극적인 참여 및 조사에 개입이 되고 있고, 점차 변호사 선임 등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① 2인 1조를 지정하여 학교에 방문하는 방법 ② 학교 폭력이 접수되면 현재는 학교에서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 연락 및 조사 일정과 장소만 지정하여 주고,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에 방문 처음부터 피해/가해(관련). 목격자 학생 상대 학생 작성 확인서 및 학생확인서를 작성 후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학교에서는 책임교사들이 학생 작성 확인서 및 학생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작성하는 사항을 반쪽 전담 조사관으로 호칭하고 있는 상황) ※ ②항이 가능하려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법률 지식 및 상담 기법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③국가 예산 문제로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개선
전담조사관(대전) • 성범죄 경력조회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로 학교 업무경감 • 전담조사관 자료관리 대장의 문제	전담조사관(대전) • 학교폭력 신고 접수 관련 "사전 심의 단계" 신설, 학교장이 판단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화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 학교의 또 다른 업무로 개선이 요구됨 - 현재 학교에서 관리하고 문서 대장으로 일원화하고 폐기 시 조사관 확인 생략 • 사안 조사 시 피·가해 학생의 갈등 조정 및 화해 중재 과정에 조사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학교폭력 또한 관계의 영역이고 생활지도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되면 학교의 역할은 사라짐 - 교육의 외주화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법적 수사관이 아닌 교육적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역할과 기능 보완 -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사안 조사 초기부터 전담조사관이 화해 중재에 적극 개입하여 조기에 문제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개선(학부모들의 가해자 양성이라는 비판적 의견 반영) • 최초 학교방문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를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관에 대해 연 1회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분리조치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학습권보장 이유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분리조치 예외사항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학교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추가 필요
전담조사관(부산) • 조사관과 회복지원단을 엄격하게 분리해둔 상황이 비효율적임. 갈등조정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일정 횟수 이상의 케이스를 담당한 조사관을 양성하게 되면 효율적임. 조사관 조사 후에 회복지원단을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나, 자격을 갖춘 조사관의 경우 학생들의 조사가 곧 사전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갈등조정이 시작된다면 한 번의 본모임만 진행하면 됨. 조사를 마친 후에 다시 사전모임과 본모임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학생과 보호자들의 시간적 소요가 많고, 심리적 부담감이 큰 까닭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회복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사관을 특화할 필요가 있음. 본인의 경우 28건 중 18건을 자체해결로 마무리하고, 이 중 4건은 갈등조정으로 마무리함. 아울러 다른 조사관의 갈등조정에 4건 참여하여서 관계회복을 이끎. 관계회복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의 확인서만 보고 자체해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에 회부한 경우도 있었음.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법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조사관 단계에서 갈등조정이 진행되어서 양 측이 화해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여도, 교육청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는 피해관련학생 측이 사안을 오인하여서 신고한 것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이 심의위원회의 출석 요청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심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음.	전담조사관(부산) •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 시간과 피·가해 학생 숫자와 등등 관련하여 2시간 기준에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예 1) 현행 2시간 이내 조사에서와 2시간 5분의 조사가 되었을 때 지급 수당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요구됨. 예 2) 하루 최대 조사 시간을 정해 두는것도 필요하다고 봄.(조사관의 점심식사 및 스케쥴 관련 등)

전담조사관(전남) • 전담조사관 역할을 하는 업무담당자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청 위촉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에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전남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위촉직 조사관님들이 전담조사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조사 과정에서 민원이 없어야 되고, 사안조사보고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신분과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교육청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갖은자가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 추가한다면 학교폭력은 2012년부터 현재 2024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면서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업무담당자가 배치되어 학교폭력 발생시부터 심의위원회운영, 불복절차까지 일원화되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제도가 실시되고 환영받고 있는 시점에 각 학교에 학교폭력전담인력(가칭 '전담실무사')이 배치되어 학교폭력(사안조사포함), 생활교육위원회, 교육활동보호 등의 행정업무가 일원화 된다면, 학교의 지역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되고 전담 조사관 제도의 올바른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늘봄정책 관련 늘봄실무사 배치 참조)	전담조사관(전남) • 조사관의 연령제한(67세 이하)- 지나친 세대차이와 언어문화 차이 • 조사관의 역량강화 - 사실에 입각한 사실중심 조사 업무능력 필요 예) 본인의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지나친 지도 편달 불필요
전담조사관(울산) • 제도 자체에 대한 시행초기인 만큼 조사관 각자의 조사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조사에 대해서 일률적인 큰틀의 조사방식 (조사의 순서, 조사간의 체크리스트 등)을 확립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각 조사관의 자율성을 가지고서 조사에 임한다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흐름의 조사가 진행되고 사안별 특이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을 조사관이 중점조사하기 용이하다고 생각됨	전담조사관(울산) •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자료 접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사관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 요청 및 접근 권한(다풀림톡, 나이스)을 명확히 부여하고, 조사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관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용어, 청소년 심리학, 학폭 법률, 조사 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훈련 및 워크숍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다룬 연구 결과와 최신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마련하여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사관은 신변 위

	협이나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관의 개인정보 보호(투넘버, 개인전화기, 노트북 등 전자기기 제공)를 철저히 하고, 위협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신변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비해 공공기관 차원의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조사관은 반복적인 갈등 상황과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사관이 건강하게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제도적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조사관 제도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조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아울러, 현장에서는 조사관의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수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사관의 업무량, 난이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 수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던가,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경력에 따른 수당 차등화, 전담조사관 예산 배정 확대, 복지 혜택 확대(건강검진, 심리 상담, 연수 프로그램, 교육비, 운전자보험, 사무용품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공정한 조사가 당연한 업무이지만 이외에 학생들 갈등 해결 및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들은 대부분 퇴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이가 60대가 대부분이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전담조사관 숫자가 많아 한 달에 조사 건수가 평균 2건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건 수가 너무 적어 소득에 어려움이 있다. 시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담조사관(경기) • SPO처럼 지역별 책임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고용노동법 법률 내에서 위촉 제도보다 기간제 전담조사관 운영으로 책무감 고양	전담조사관(경기) - 학기 초반에 명확한 직무교육과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연수를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사 절차, 대응 방식,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체계

	적 가이드라인과 조사 매뉴얼 표준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조사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담조사관(충북) • 학교에서는 사안이 발생하면 학폭접수보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작성→ 교육청 보고 → 교육청에서 조사관 배정 → 조사관이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조사 일정 조정 등 모든 과정 직접 수행 → 사안보고서 작성 제출. (이유) ① 교사업무 경감 필요 ② 피해관련 학생의 2차 피해 예방 피해관련 학생은 1차 학교측에 피해 사실 진술, 2차 조사관에게 피해 진술 3차 경찰신고 사안일 경우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해야 하는 적게는 2회, 많게는 3회 (학폭심의 사안인 경우 4차) 피해진술을 하면서 학폭피해를 신고하고도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학생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으로 생각됨. - 학생확인서 작성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1차, 전담조사관 2차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의 불편호소하는 경우 있음. ③ 학교의 사안 보고를 위한 기초 조사 결과와 조사관의 1차 사안 조사 및 보고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 나. 학폭사안 조사 과정중에서도 조사관이 피,가해 학생간(또는 부모) 화해의견을 파악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여 갈등요소 제거 필요(현재, 사실확인 조사에 치중하고 화해를 적극 권장하지 말것을 교육 받았음 -민원제기 우려가 그 이유임) (이유) 학폭신고로 피,가해 학생간 사안이 긍정적(화해 등)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감정이 갈라져 '사과는 하지만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부정적 상황이 대두됨(조사관이 조사한 사안 경험상 학생 간 관계회복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교육청(제로센터, 조사관), 학교, SPO경찰 간 정보공유, 협업 미흡 -학생지도, 교육, 선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우범지역, 우범학생 정보교류)	전담조사관(충북)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촉방식 변경 • 최저 임금의 보장 •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 조사관 수가 많은 관계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다른 일과 병형하는 조사관이 많음 • 각 시.도별별 배당 방식의 상이 • 각 시.도별 특성 정책에 따라 사안 배정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관련자수에 따른 전담조사관 배정 할 것인가? 사안별 배정할 것인가? 사안 배정시 인원에 따른 수당 지급등 통일성 요망되고 출장 교육 등으로 인한 수당 지급이 요망됨.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 교육적 시각으로 문제해결 관점 보다는 잘잘못을 가리는 시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전담조사관(제주) • 현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위촉이다 보니, 연락이 와야 조사를 나가는 형태로, 언제 조사 의뢰 연락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전담 조사관으로서 일정을 마냥 비워두고 기다려야 하는 점이 아쉽다. 전담 조사관들의 업무 능력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전문 연수를 통하여 일정 시간 학생 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연수를 진행하게 하거나 화해 조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함.	전담조사관(제주) • 정기회의 또는 사례회의 개최 – 조사관 간에 월례회의 같은 정기회의를 통해 사안 내용을 공유하고 좋은점, 문제점, 개선점 등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 대처법이나 조사방법 등을 조사관들이 공유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역량강화교육 – 학부모 민원대응, 개별학생에 대한 개입방법 등 조사 시 필요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해조정지원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사 중 학생들이 화해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안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담조사관(경북) • 사안조사보고서의 용어 통일(예: 신고학생(피해자, 피해학생), 피신고학생(가해자, 가해학생)) • 조사 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기존 시설 이용이나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한 사안의 경우 하루에 조사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조사관의 집중력 문제와 조사 학생들의 일정 문제, 책임교사의 업무 부담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안별 조사 일시와 수당을 조정이 필요함. 사안별 조사하는 시간과 사안 유형이 복잡한 경우에 수당 인상 필요. ① 안 사안별 수당 책정: • 1: 3인이상 다수의 가해학생을 1명의 조사관이 조사할 경우 --- 250,000원 • 1: 4인이상 다수의 가해학생을 2명의 조사관이 조사할 경우 --- 각 210,000원 • 1: 8인이상 다수의 가해학생과 목격자를 2명의 조사관이 조사할 경우 --- 각 250,000원 • 1: 10인이상 다수의 가해학생과 목격자 조사와 사안 유형이 3개 이상인 경우 2명의 조사관이 조사할 경우 --- 각 300,000원 ② 각 교육지원청에서 결정 •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이 결정 • 사안조사 보고서룰 보고 판단하여 수당 결정 • 사안조사 보고서에서 1: 4인 이상, 사안 유형이 3개 이상인 경우, 서로 상반된 진술로 목격자 조사가 다수 이루어진 경우 등 --- 250,000원 ~ 300,000원	전담조사관(경북) • 수당 개선(예: 사안당 재방문시 추가수당 있지만 4회 이상 지급안됨/야간수당(자사고 경우 pm10시 이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조사관의 역량(조사기술 및 사안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면 조사관의 업무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짐. • 학폭 동향에 대한 공유(부모면담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전달에 용이) • 매뉴얼이 좀더 구체적이고 기준(예: 지속성)이 명확해져야 하며, 전담조사관의 매뉴얼 숙지 및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역할

시도교육청의 역할로 전담 조사관들 사기 진작 및 교육을 위한 연수 강화, 조사 환경(노트북 활용, 조사실 등) 개선, 회복적 갈등 조정 업무를 포함한 조사관 역할의 유연성 있는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전담조사관(인천) • 조사관의 역량 강화 및 심신 회복을 위한 지원입니다. 조사관 주도의 실질적인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서로의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조사관으로서 지치지 않고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전담조사관(인천) •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하여 특별하게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들 전체에 대하여 사기 진작 및 교육을 위한 1박2일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주었고, 성과사례 발표회도 개최하여 주었습니다. • 시도교육청 역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연수 및 교육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한 강사(교육단체 대표자. 변호사들) 중심 교육보다는 장학사. 책임교사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과의 대화 중심의 시간을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담조사관(대전) • 학생 면담을 위한 상담실의 제공에 따른 행 · 재정 지원 –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면담실이 다양함(상담실, 회의실, 학교운영위원회실, 교무실, 빈 교실 등) – 효율적인 면담을 위해서 면담실의 환경이 중요함 – 또한 노트북 활용 환경 조성 : 학생확인서 인쇄, 출력 환경 등 • 전담 조사관 인력 확보 – 전문 전담 조사관의 인력풀제 운영으로 사안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적정 수당 지급으로 사안 조사의 질 제고 – 현재는 사안 당 수당 지급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1회 성 1차 조사로 부실 사안 조사의 개연성이 있어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의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조사관 업무의 곤란도로 볼 때 지급 수당의 개선이 요구되며 시 · 도마다 수당이 달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당에서 오는 박탈감 문제 해소 • 학교에 따라 전담 조사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외부인의 학교 업무 간섭, 업무경감이 아닌 업무 부담 등)에 대한 문제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홍보로 조사관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담조사관(대전) • 전담조사관 선발 및 위촉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 관할 조사관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청에 위임하지 말고 시도교육청(교육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도교육감은 매년 전담조사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 및 조사관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사관의 역량강화,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전담조사관제도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등

• 동일 학교에서 사안 발생 시 최초 사안 조사를 담당한 전담 조사관을 재배정해 사안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사안 배정을 순차적으로 윤번제로 하다 보니 전에 사안이 발생해 사안 조사를 한 경우 다시 그 학교에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음 그 학교 사안 조사를 한 조사관을 재배정해 사안 조사의 효율성 제고 – 다른 조사관으로 배정 시 학교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상담실 안내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 조사관 역시 처음 방문 하는 학교에 대한 낯 서러움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	
전담조사관(부산) • 조사관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진행한다고 순번으로 배정하는 방법은 고려가 필요함. 저는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의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임. 다수의 학생이 연계되어 있거나, 성폭력이나 특수폭력 등 중한 사안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돌아온 재심사안, 조치 심의가 어려우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다시 심의하겠다는 사안 등을 취급함. 이와 같이 조사관의 경우에도 특성별 배정이 필요하고, 세분이 어려우면 심의위원회처럼 심각한 사안을 특정 위원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회복지원이 가능한 전담 조사관과 심각한 학교폭력을 담당할 전담 조사관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해당 전담 조사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 피해관련학생과 가해관련학생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할 경우 심의위에서는 사실 인정이 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갈등조정을 명하여서 서로의 사실 인정과 관계회복을 꾀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람. 그냥 두게 되면 거짓말하면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허상을 심어주게 되니, 이의 해결책을 연구하여야 함. •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담 조사관을 실시할 때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초등학교는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고 싶어서 많이 신청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도움을 많이 청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이른바 나름대로 학교폭력 대처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경우 그러한 경향성이 높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보고서를 받아보면 학교에서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이 전담조사관들의 보고서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보임. 그러므로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의 연수	전담조사관(부산) • 단위학교 관리자와 학폭담당지도교사에게 학폭조사관의 대우와 재고인식 필요함.

회에서 전담 조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사례를 전담조사관과 학교측의 경우를 들어서 적극 홍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전담조사관(전남) • 전담조사관 제도 안착을 위한 조사관 인력 확보 및 공무원(또는 공무직)화 / 각 학교에 전담실무사를배치하여 학교폭력, 생활교육위원회, 교원활동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학교업무경감 • 예산 확보 • 전담조사관 제도에 따른 지역사회 의견 수렴 필요. • 전담조사관 포함 학교 및 교육청 학교폭력업무담당자에 대한 힐링 연수 확보	전담조사관(전남) • 정기적 조사관의 역량 강화(사실중심 조사 능력배양) • 정기적 아동학대 교육 • 정기적 교권침해예방 교육(조사관일뿐 학교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지시하는 신분이 아님을 인지교육)
전담조사관(울산) • 학교와 전담조사관의 역할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봄. 간혹 조사관과 보호자와의 일정 조율 이후 학교에서 해당학생에게 조사일정에 대하여 전달하지 않았다고 유선상 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가 있는만큼 전체적인 사안조사에 대하여 조사관에 일임하여 진행하되 조사일정, 내용 등에 대하여 학생과의 소통은 보호자 뿐만아니라 학교에서도 이중전달이 필요하다 생각됨	전담조사관(울산)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은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 상담 기술, 조사 방법론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관들이 실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담조사관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정기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담조사관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담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으로, 사례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조사관들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나 워크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복잡한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적인 대응 사례를 공유하여 조사관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내 다른 조사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조사관들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적 조언과 방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학폭 사안이 발생하고 면담 조사하는데 시일이 많이 지난 뒤에 면담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학폭 사안에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사안이 발생하면 3일 이내에 면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피해추정학생 면담조사 후 진술이 크게 엇갈려 추가 조사 발생 시 교육청 담당자와 다시 일정을 상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질문할 내용이 한두개 정도 일 때 해당 학교를 재방문하지 않고 관련 학생 동의하에 유선으로 질문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학교폭력 종류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사이버 폭력이 많아지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전담조사관(경기) • 지속적인 연수로 전담조사관의 질적 상향 평준화 노력	전담조사관(경기) • 조사하는 과정에 조사관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사님께서 많은 업무로 인하여 •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일이 답변을 주는 것이 어려우시거나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상담해줄 수 있는 곳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현장에서 조사관의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면담을 진행할 때 장학사님이 함께 나가주셔서 피드백을 해주신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면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담조사관(충북) (조사관 측면) • 조사관의 전문성 역량 강화, 객관적 조사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자료 개발 필요 • 전담조사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조사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필요 (조사관은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마치 교육청의 용역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음) • 조사관의 활동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피드백 설문조사를 하여 문제점, 개선할 사항 도출 필요 • 학교폭력 학생 수가 많을 경우 여러 명의 전담조사관을 배정하는데 책임조사관을 지정하여 통일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학교, 학생과의 일관된 소통창구) • 조사 시 교통비, 수당 및 연수, 교육시 출장비 등 현실화 필요	전담조사관(충북) • 정기적인 워크샵을 통한 전문성 함양을 해야 될것이고,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담조사관과 수시로 소통 학교폭력 조사관이 원할 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조정을 통해 조사관과 학교간 갈등 해소 •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담 조사관 제도가 정착될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함.

• 조사관 위촉할 때 인원 충원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조사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것이 요구됨 (요건 예 : 학생과 학교문화 이해도, 전문성, 용모와 자세 등) • 역량 있는 전담조사관 확보를 위한 선발과 재교육 과정 필요하다고 생각됨. • 조사관과 학교측과의 소통의 어려움 해소(SNS캡쳐 등 증거자료를 학교측에서 받아서 미리 조사관에게 전달해 줘야 검토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음) (학교측) • 학생이 안정된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컴퓨터 등 마련 • 학교측에서 학폭신고 사항이 학생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필요(특히 피해학생이 신고를 했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음)	
전담조사관(제주)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피드백 실시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기적인 연수 실시 •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연수 시,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지원해야 할 내용 등 연수 • 학교폭력 전문 조사관의 분기별 협의회 실시(연 4회)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활동 수당 기준이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전담조사관(제주) •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은 조사관 제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수월하게 사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조사관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를 개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회 정도는 담당교사, 학교폭력조사관, 화해조정지원단 등이 함께 모여 업무개선 방안을 논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담조사관(경북) • 일선 학교에 대한 책임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연수 강화 (책임교사의 사안 접수 전에 사전 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가 선행 --- 피해와 가해 학생의 최초학생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 • 전담 조사관을 위한 공간 마련(보고서 작성, 사안 조사를 위한 정보 교환 등) • 사안조사보고서에 전담조사관 사인을 전자 사인으로 갈음. • 전담 조사관 담당 구역이나 학교를 배정하여 사안 배분. -- 학교 사정이나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조사할 경우 조사를 더 잘 할 수 있음. • 사안 조사가 비정기적이므로 전담조사관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조사관 담당 구역이나 학교를 배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순찰 임무 부여.	전담조사관(경북) • 전담조사관의 이력만 보는 것보다, 전문성(기본소양-훈계위주, 권위적인 태도 등, 면담기술 등)을 확인하고 위촉했으면 좋겠음. • 전담조사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갖춰진 조사관을 관리하면서 사안을 더 배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음. • 학교마다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 상이함(최초진술확인서의 일원화) • 최초진술확인서의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경우가 있고, 한줄로 끝낸 경우가 있음. 예외사항(장애학생, 성폭력 등) 외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당부함.

7)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역할

교육부의 역할로 조사관의 법적 지위 보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책임(업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등 포함), 업무 사항, 그리고 면책 사항 명시, 학교별 전담조사관 배치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학교 업무 경감,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피· 가해 관련 학생의 동의)에 대해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없이 학교 전담 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전담기구 처리 가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 배치 배제, 회복적 지원의 모든 경우 신청 허용, 늘봄 실무사처럼 학교폭력 업무 실무사 각 학교 배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업무 경감 취지에 부합하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면담 조사 시 업무 담당자 미 동석 명문화,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언급하였다.

전담조사관(인천) • 조사관의 법적 지위 보장입니다.	전담조사관(인천) • 4항 법적 보호 방안에 작성한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책임(업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등 포함), 업무 사항, 그리고 면책 사항을 정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때 보호자나 변호사 동석을 할 경우 보호자 또는 변호사의 역할(참여만 하고 의견 개진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 대하여 명시적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전담조사관(대전) • 학교별 전담조사관 배치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학교 업무경감 – 현재는 학교에서 최초 사안 접수를 하고 1차 사안 내용을 파악하여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후 교육청에서는 전담 조사관을 통하여 사안 조사와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음 – 학교 현장에서는 종전과 같은 업무 처리로 업무경감을 체감하지 못해 처음 사안 발생 시부터 전담 조사관이 맡아 업무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 사안의 성격 정도에 따른 선별적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 학교폭력으로 신고 후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파 가해 관련 학생의 동의)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없이 학교 전담 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 개선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경미 한 다툼과	전담조사관(대전) • 조사관 선발,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이 현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 양성 비판 의견에 관한 대응책 마련 • 전국 전담조사관 운영 모범 사례집 발간 배포 • 학교폭력 사례집 발간 배포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2023년도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서 초등학교가 4.6% 증가 원인) - 따라서 학교에서 판단하여 학교전담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 배치 배제 •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우수 전담조사관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의 곤란한 정도에 적합한 예산 확보가 요구됨	
전담조사관(부산) - 조사관 단계에서 회복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학교폭력자체해결제에서 자체해결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심의를 원하는 경우 회복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앞에서 자체해결제에 해당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갈등조정을 실시하여서 관계회복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두어야 할 것임. - 학교폭력예방법이 해당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한다면,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회복적 지원을 법률 제13조의 2에서 자체해결제를 부동의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하지 말고,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펼쳐 두고, 당사자들이 부동의하면 갈등조정은 진행되지 않게 되니,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음. 대상학생들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조치를 받게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대상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인 점을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음.	전담조사관(부산) •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보다 전문적인 조사관이 투입되어 정확한 조사가 시행 중에 있다는 언론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파 인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전담조사관(전남) •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을 분리해 주시길 바라고, 2) 그 시작으로 늘봄실무사 배치처럼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실무사를 각 학교에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3) 지역교육청 또한 학교폭력 건수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인력 배치의	전담조사관(전남) •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캠프,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 • 학교폭력 조사나 업무처리가 학교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업무이고, 조사관은 단지 조력자임을 홍보 할 필요(ex: 학교담당자는 조사관에 모든 업무를 넘기고 학교폭력 업무에 관련하여 전혀 모르쇠로 학부모를 대하면서 민원발생)

편차 및 업무 가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시 지역교육청의 매뉴얼에 맞는 발빠른 대응이나 업무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업무담당 인력 증원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담조사관(울산)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신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보다 원활한 조사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조사과정 중 조사대상이 피·가해 구분과는 별개로 모두가 학생이기 때문에 다수의 조사관들도 조사방식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게 접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조사 중 학생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 (매우 작은 목소리, 동문서답) 등의 이유로 조사관이 반복되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거나 피·가해 학생의 사전 작성된 확인서 내용 중 크로스체크를 위한 질문 등에 자신의 아이를 몰아간다고 과잉반응을 하며, 기 안내하였던 조사관의 신분이나 소속 등을 되묻는 등 조사흐름을 방해하는 보호자들의 반응이 있어 조사시간이 상당수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억압적이고 수사와 같은 방식의 조사방식이 아니라면 조사내용에 한하여 전담조사관의 조사방식에 대한 특수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하고 이렇게 되어야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것이라 생각됨.	전담조사관(울산) •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며 정책, 교육, 예산 지원, 데이터 관리 및 법적 감독 등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교육부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조사관들이 학교폭력 관련 법령, 상담 기법, 조사 기법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교육부는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조사관의 적정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처우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조사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과 자료를 개발하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례와 조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과 경향을 분석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제공되어 예방 활동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학교폭력 전담조사 시 나 사후 학부모 민원이 발생 시 법적 권한이 없어 취약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폭 관련 학생들 면담	전담조사관(전북) • 시·도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전담조사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시 학교 관계자가 동석하는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업무 경감 취지라면 이에 맞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들 면담 조사 시 업무 담당자가 동석하지 않도록 명문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담조사관(경기) • 전담조사관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전담조사관(경기) • 조사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지원 •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 체계를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드라인 제작 • 조사관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 • 조사관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리 감독 •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전담조사관(충북) • 조사관제도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는 명시 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률· 제도 정비 필요 • 조사관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관 신분의 명확화와 지원 체계 필요 • 조사관의 조사업무가 공무인지 여부의 명확성 필요 (예 : 조사보고서를 훼손할 경우 공문서인지)	전담조사관(충북) •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는 명시 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 법률 제도 정비 • 전문성 강화 추진방안에 대한 조사관 선발 등 신분의 명확화 추진 지원 • 각 교육청별 학교폭력 조사활동 모니터링으로 상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화 최적화 방안 모색 개선사항 발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 종합적인 실태 파악 최적화 방안 모색
전담조사관(제주) • 시도교육청 별로 배정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수의 자율성 부여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컨퍼런스 개최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전담조사관(제주) •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만족도가 높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담조사관(경북) • 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강구 • 지속적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연구하고 보완책 강구	전담조사관(경북) • 조사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연수, 성과보고회 등 실적위주 보다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필요함)

8) 전담조사관의 표준화된 조사 매뉴얼 개발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

마지막으로 전담조사관의 표준화된 조사 매뉴얼 개발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에 대하여 조사관들은 다양하고 실제적인 제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윤리 원칙(공정성, 객관성, 비밀 유지, 인권 존중 등), 피조사자의 권리 보장 (예: 사전 고지, 거부권, 상담권 등), 기본 정보 수집 및 분석, 법적 근거 검토(조사 권한, 절차, 적용 법규를 사전에 확인하여 조사관의 역할과 한계 인식), 조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상황 대처요령, 법적 문제 발생 시 변호사, 감독기관 등과의 협업 절차 및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처리 절차 등 예상치 못한 변수 처리 방식, 그리고 결과 정리와 보고서 작성 및 기록 보관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철저한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전담조사관(인천) • 2024년 처음으로 실시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지금까지 제공된 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교육청에서 제공한 간단하고 핵심적인 조사 흐름에 따른 매뉴얼(조사관이 말해야 할 멘트까지)을 숙지하면 조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조사관(인천)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때 대상 학생은 청소년 보호법 및 민법상 19세 미만으로 청소년입니다. 보호자 참여 없는 청소년 대상자 상대 피해/가해(관련) 작성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학생의 상태 및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원의 동석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알고 있으며, 보호자 또는 변호사 동석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① 법적으로 보호자 또는 변호사의 동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문화 ② 보호자. 변호사. 교사가 동석하였을 경우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보호자. 변호사. 교사의 역할(참여만 하고 의견 개진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 대하여 명시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는 참여하면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명문화 필요
전담조사관(대전) • 사안 조사 단계별 사안 파악의 사실확인 질문을 넘어선 회복적 질문 안내 – 획일화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의 사실 확인의 증거 중심의 질문에서 교육효과를 병행할 수 있는 회복적 질문 안내가 필요함 • 피해자 회복을 위한 내용이 포함	전담조사관(대전) •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른 분류 예시 반영 – 신체폭력: 시비를 거는 행위, 신체폭력 현장 방조자, 약취 유인 감금 행위 등 – 언어폭력: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뒷담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등 – 사이버폭력: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 따돌림: 2인이상 학생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 금품갈취: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전담조사관(부산) • 전체적으로 TF를 구성하고, 필요한 위원을 모셔서 작성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매뉴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 학교폭력사안 매뉴얼을 감안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행에 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담겨야 할 것으로 생각함.	전담조사관(부산) • 조사방법과 보고서 내용 작성 매뉴얼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봄. 예)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각기 다른 조사보고서로 인한 심의에 불편을 미칠 수 있음.
전담조사관(전남) • 2024년도 매뉴얼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 굳이 추가하자면,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통한 민원응대 방식 • 학생 눈높이에 맞는 대화방식	전담조사관(전남) • 본인의 뇌피셜에 입각한 사안분석이 아닌 사실에 바탕으로 사안조사 • 아동학대예방 메뉴얼 • 교권침해예방 메뉴얼
전담조사관(울산) • 전체적인 조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대하여 AtoZ로 조사관과 학교 각각의 역할과 조사진행 구간마다 체크리스트를 정하고, 현장사례 위주의 주기적인 조사관들의 집합연수 교육을 통한 전체적인 조사의 질적향상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담조사관(울산) • 윤리 원칙: 공정성, 객관성, 비밀 유지, 인권 존중 등을 명시하여 조사 수행 과정에서의 기준 지키도록. 피조사자의 권리 보장 (예: 사전 고지, 거부권, 상담권 등). • 기본 정보 수집 및 분석: 사건 배경, 관련 자료, 피조사자 정보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방법 • 법적 근거 검토: 조사 권한, 절차, 적용 법규를 사전에 확인하여 조사관의 역할과 한계 인식 • 조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상황 대처: - 피조사자의 비협조적 태도 대처 방법 - 조사 중 긴장 상황 완화 기법 • 법적 문제 발생 시: - 변호사, 감독기관 등과의 협업 절차. (자문 변호사 연락처, 담당 기관 대표 번호 등 기재) - 법적 분쟁에 대비한 기록 보존 요령. 예상치 못한 변수 처리: -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처리 절차 - 조사 범위 확대 또는 축소 시 승인 절차 • 결과 정리: - 수집한 증거와 진술 정리 방법 - 분석 및 결론 도출 기준 • 보고서 작성: - 조사 목표와 결과 간의 연계성 명확화 - 사실과 의견 구분, 증거 기반 보고 - 보고서의 구조화: 개요, 조사 내용, 결론, 권고사항. • 기록 보관 기준: - 조사 자료의 보관 기간 및 폐기 절차 • 추가: - 관련 법령 및 규정 목록

	- 표준 문서 (보고서, 면담 기록지 등) - 조사관의 기본 체크리스트 (조사 준비 및 진행 시 확인 사항) -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반영하는 체계(최신)도 구축해야 합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마다 조사보고서 제출하는 형식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아 보고서 사례 예시안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매뉴얼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담조사관(전북)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매년 바뀔 수 있다.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며 처음 전담조사관이 되어 조사를 진행할 때 매뉴얼만 보고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면 좋겠다.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혹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며 잠은 잘 자는지 그리고 밥은 잘 먹는지,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질문은 전담조사관과 가·피해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 신뢰감과 친밀감을 주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전담조사관(경기) • 사안조사 보고서의 표준화 연수 • 획일적인 학생 분리 조치 개선(현재 의무적인 2호 조치를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할 때 분리 조치 시행, 학폭이 아닌데도 가해 신고만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 구제), 조사와 수사의 개념 이해	전담조사관(경기) • 학생인권침해사례 : 면담과정 중에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에 대한 지침 • 조사 절차: 초동 조사, 진술 확보, 증거 수집, 사건 분석 등 단계별 지침 • 대응 방법: 이해관계자의 감정적 대응이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대처법 • 법적 기준: 사건 판단 및 조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적용 방법 • 문서 작성법: 조사 보고서 및 공문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과 사례 • 윤리 규정: 학생 인권 보호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행동 지침
전담조사관(충북) • 전문적, 객관적, 공정한 조사를 위한 학폭 사례별 착안 사항, 대화 기법, 주의사항 등을 기재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학생 및 보호자의 돌발 행동에(학생의 조사 거부, 보호자의 공격 등) 대한 대처 요령 등. •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담조사관(충북) • 전문성.공정성한 조사를 위한 사례별 대화기법 • 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요령 예를 들어 공문서 작성방식에 의한 줄간격 기호 등 통일 매뉴얼 등 • 기타 사안으로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명확히 없는 것으로 조사관 배정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해 관계가 있을 때 회피하도록 하고, 조사에 임할 때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음을 고지 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됨

전담조사관(제주) • 사안 조사 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안 유형별 학생 이해 내용 • 사안 장소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 및 세팅 방법 예시 • 사안 조사 시 전담 조사관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과 지양해야 할 질문 예시 • 각종 서류, 보고서 양식 및 예시 자료(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포함된 양식) 첨부 • 관련 학생 보호자들의 면담을 도울 수 있는 참고 자료	전담조사관(제주) • 학부모, 비협조적인 학생에 대한 대응 방법
전담조사관(경북) • 수업 시간 중 조사할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서와 학교장 허가서를 A4용지 한 장에 양식을 만들어 사용.	전담조사관(경북) • 면담시 조사관의 자세, 라포형성의 방법, 쟁점에 대한 질문기법, 증거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법, 전반적인 사안보고서 작성법(예: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작성방법), 관련학생의 특성파악(예: 정신분열 등) •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의 활용방법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4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미래지향적 활용 방안 및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의 시행, 분석, 결과 도출을 시행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대응 및 전담조사관 관련 해외 사례를 취합 분석하였다. 둘째, 17개 시·도교육청의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을 취합 분석하였다. 셋째, 제도 시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 교원, 현장에 투입된 전담조사관, 다양한 제도 관련 간담회(현장 교사 간담회, 국회 간담회 등) 그 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분석하였다. 이상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의 성과 및 한계, 개선 방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의 본래 목적 부합성

첫째, 교사의 업무 경감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 초기, 그리고 현재도 부분적으로는 업무 가중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절대다수가 업무 경감을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안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와 관련하여 절대다수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등 장점이 일부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미흡이나 역할에 대한 교원의 보조활동 상존 등 단점을 상쇄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지속된다면 연수 등을 통해 조사 능력이 우수한 전담조사관이 다수 양성되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에 의한 사안 조사의 미흡한 점이나 보완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전담조사관과 소통하여 재조사나 서류 보완 제출 등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동안

교원이 교과교육과 생활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자료 및 있을 수 있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사법적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되는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은 제도가 일관되게 시행된 이후 현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지속적 시행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제도의 지속적 시행에 반대하는 견해는 없었다. 초기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현재는 부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통한 지속적 추진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전환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도는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의 극대화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속적 시행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개선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이에 대하여 교육 주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경우 학교의 역할 세우기, 조사관제 채택 여부에 대한 학교의 선택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파견 요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요청(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이 있을 경우에만 전담조사관을 요청하든 아니면, 사건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조사관을 요청하든,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든 학교가 선택하는 학교 요청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있다.

둘째, 초·중등교원은 교권회복 학생지도권 범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시 관련 교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워 교사가 선제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셋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관의 처우개선, 고용 보장, 조사에 따른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에 대한 보호 방안이나 사안처리에 대한 정밀하고 일원화된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넷째,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보면, 시·도교육청별 의견이 다양한데 현재는 관련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수 강화, 신분 기준 마련, 필요시 선발 기준 등의 변화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일례로 현재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퇴직공무원, 기타의 조건상, 향후 전담 조사관의 경력이 늘고 조사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된 조사관들이 고령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저연령대의 조사관 선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외에 조사관의 신분 및 법적 근거 마련, 조사관 배정 사안의 기준 정립, 조사관의 조사 권한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명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나아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보고서 제출 및 관리 등에 관한 문제(보안관리 문제 등), 매뉴얼 보급,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상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외국 사례 및 현재의 제도 운영 상황과 종합하여 전담조사관 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학교폭력 예방, 대응, 회복 등 모든 제반 실무적 사항에 대하여, 정부나 교육청이 아닌 학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한국과 동일한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프랑스나 영국 등 학교 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외국의 사례를 따라 한국이 다시 책임교사제로 회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육 주체들의 만족도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제도는 발전적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지향적 선진형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차원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다섯 가지 핵심 용어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자율성이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서 명시한 '경미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보완적인 정확한 의미 규정이 필요하다-, 즉 교육지도로 충분히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경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활용하기보다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지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다. '모든 학폭 사안에 대하여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은 현실성도 없고, 또 다양한 부작용을 낳으므로 실효성도 부족하

다. 학교에게 자체 해결의 자율 영역을 보장해 주되, '특정 조건들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전담 조사관에게 사안 조사를 이양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조건들'의 의미 규정은 세밀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선택·규정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유형(안)의 구체적 사항은 정책제언을 통해 상세하게 제시될 것이다.

유형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폭력 피해가해 학생측이 모두 요구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
유형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폭력 피해가해 학생 측 중에서 어느 한쪽에서 희망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양측 중 어느 한쪽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
유형 3	학교 측에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전담 기구에서 할지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의뢰할지 결정
유형 4	기존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
유형 5	모든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조사
유형 6	성폭력(경찰 수사 시 제외),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 발생한 폭력 중 양측 학생 측과 학교 측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시
유형 7	전담조사관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셋째, 정밀성이다. 사안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정밀하게 확인되고, 또 충족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확한 법적 근거, 안정적 제도 구축의 토대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다. 다음, 법률적 토대 위에 정밀한 설계, 즉 구체적이고 정밀한 매뉴얼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실효적 메뉴얼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배부된 매뉴얼에 대해 책임교사는 물론 모든 교사, 그리고 전담조사관들이 정밀하게 철저히 숙지하여, 사안 발생 시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하지만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관성이다. 일단 제도의 큰 틀과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이 부여된 상태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제도의 모든 대응은 일관되게 실행되어야 한다. 매뉴얼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일관된 시행이야말로 정밀성과 함께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필연적 조건이다.

다섯째, 책임성이다. 학교의 교원과 책임교사, 전담조사관, 해당 교육청과 심의위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보호권과 보장권이 실제적으로 부여된 상태에서, 매뉴얼의 규정 위반 등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제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정책 제언

1) 단기적인 정책

(1) 교원 학교폭력 업무의 합리적 조정

업무 부담 경감이 미비하다는 입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하지만 선별적 대응과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며 불가능한 것은 - 일례로 1차 사안 조사의 부담도 느끼고 싶지 않으니 폭력 사안 전부를 학생이 직접 교육청에 접수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요구 등 -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학생 스스로 교육청에 접수하고 교육청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면, 즉 '학교폭력 조사 업무 교육청 완전 이관'이 될 경우, 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는 학원 강사와 차별화된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사안 발생 후의 1차 조사는 교원의 업무(교육과 지도)에 포함된다. 학생 간 갈등에 개입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교내 갈등 상황에의 대응이 당연한 책무이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이다. 또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명시된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교원이 지원해 주어야 할 행정업무 대부분도 과중한 업무라기 보다는 업무의 질적 경감(책임에서의 자유 등)이라는 차원에서, 또 사안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분명 불필요하게 교사에게 가중된 몇 가지 업무의 경우는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적절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조사관과 학부모의 일정 조율 문제는 교사나 조사관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교장이나 교감이 직접 면담 날짜를 통보하거나, 행정실에서 AI를 통해 일련의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고 선택권을 주면 될 것이다.

둘째, 전담조사관 조사 시 동석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학부모의 주관적 관점에서 기인한

경향이 있는 것이므로 -일례로 동석한 교사가 조사 과정에서 도와주지 않아, 또는 미동석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는 등- 조사 시 교사가 전담조사관의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다. 역으로 동석한 교사가 신경 쓰여 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 같은 경우, 책임 소재가 동석한 교사의 문제가 물론 아니지만, 유사한 민원 제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담조사관과 교사의 동석 이유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고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조사관 면담 시 안내자료(학생용)] 안에 관련 내용을 수정 첨부하면 될 것이다. 또 교사 중에 동석 자체를 불필요한 업무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사관 단독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사안 조사 시 동석은 당연히 학생지도와 돌봄의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교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학생의 표현력 부족 등으로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부 견해가 있다. 일견 의미 있어 보이나, 학교 내에 사법 영역의 공존이 수용될 경우, 조사관의 조사 공간이 변호사 대리전으로 법정화될 수 있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득보다 실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더욱이 학생들은 조사관과의 대면 진술에서 진실하게 거짓 없이 말하는 정직의 인성도 함양해야 하며, 현재 조사관들의 역량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족하진 않은 상황이며, 사안 진술 시 다수 학생의 심각한 표현력 부족이 일반적 현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 공간을 불필요한 법정 공간처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물론 제반 학부모 민원은 원칙적으로 공적 통로를 통해서만 받도록 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교사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 통화로 간단히 사안 접수를 하는 일 등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사와의 상담은 당연히 가능하나, 정식 사안 접수는 서류상으로 또는 인터넷의 공식 접수 창구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 시 육하원칙에 따른 상세한 진술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나아가 접수된 사안의 교육청 접수 여부 역시 해당 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이 부분 역시 학기 초에 학부모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서도 접수된 사안의 교육청 이전 여부가 일단 결정되고 난 후엔 어떤 종류의 민원이든 교사 또는 조사관의 개인적 응대는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로 민원 전화가 올 경우 공적 서류와 인터넷 창구를 통해서만 문의와 민원 제기가 가능함을 사전 고지 해야 할 것이다.

(2)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무엇보다 사안 조사 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혼란은 사실상 정밀한 실효적 매뉴얼 부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매뉴얼 제작, 배포가 시급하다. 매뉴얼 제작은 교육부와 현장 전담조사관 및 교사 그리고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매뉴얼 제작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순한 서류상의 의견만을 수렴 참고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매뉴얼은 학교와 교사, 학부모, 전담조사관 별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고, 배포된 매뉴얼에 대하여 책임교사는 물론 교사 전체, 그리고 전담 조사관들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된다. 매뉴얼에 따른 철저하고 성실한 절차 진행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민원과 비생산적 후속 법률절차 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혼란의 자연스러운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원화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마련

학교폭력 사안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총체적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일원화된 시스템은 공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앞서 소개한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 시 학생의 치료를 위한 학교 안전 공제시스템'과 같은 일원화된 시스템과 실제적인 모델 제안을 확인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제안된 모델을 보면 아래와 같은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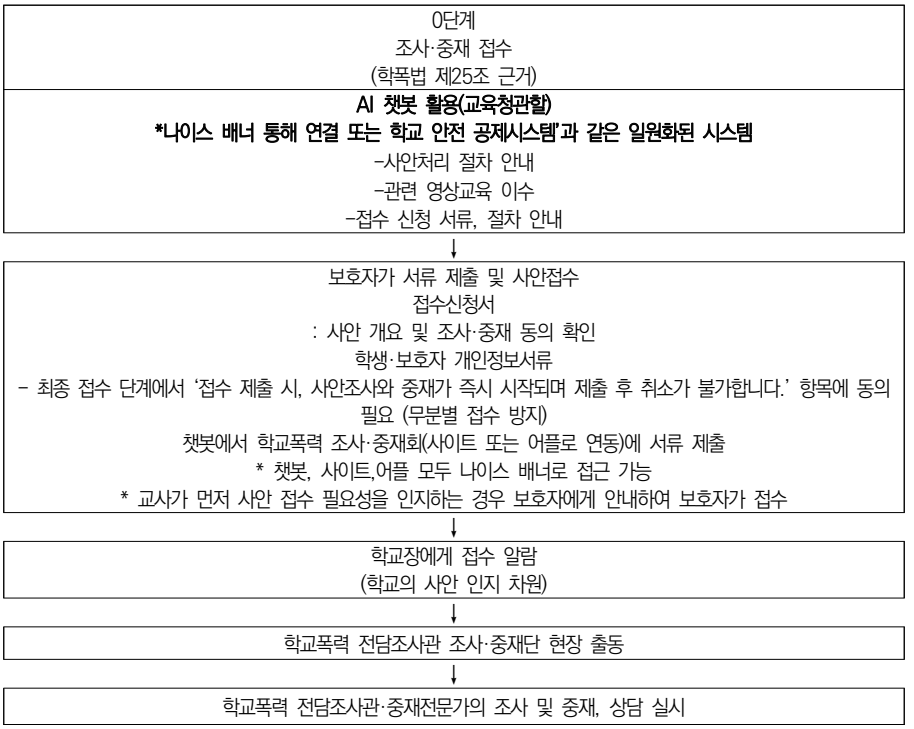

참고: 00연구회의 현장교사정책TF 보고서 내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수정, 보완, 제안

위 모델은 분명 부분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남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일원화된 접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즉 '교육지원청에의 일원화된 청구 접수를 신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법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투입 이후부터는 현재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차이는 사실상 사안 접수를 학부모가 직접 하도록 하고, 교사는 필요시 안내만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사안 처리의 일원화라기보다는 사안 접수의 일원화로 볼 수 있으며, 접수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다소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다루는 '사고'와는 질적으로 다른 학생 간 갈등, 대립, 폭력과 관계된 '인간관계'의 사안이다. 119에 신고하듯 신고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고가 아니라 존엄성을 지닌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이

배후에 있고, 미래의 건전한 공동체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적 사안이라는 뜻이다. 부정적인 사안이지만 그러한 사안 처리에 함께 참여하므로 학생들이 인성의 배려나 공감 그리고 정직과 같은 덕목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 영역이다. 따라서 학과 교육 외에 교사의 핵심 역할인 돌봄과 지도가 일차적으로 필요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갈등 상황 발생 시, 교사에게 정신적 육체적 도움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교육청에 신고 시스템이 있으니 부모님께 신고하시라고 하렴!"이라고 말하며 사안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교사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 교육청의 사안 접수 여부를 학부모에게 일임한다면,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더라도 실제론 사안 접수가 남발될 우려가 있고, 또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 개입함으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의 일차적 교육 주체는 교사이다. 따라서 사안을 접한 해당 교사와 책임 교사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화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인간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경미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는 물론 상호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교장 보고 및 교육청 사안 접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절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전담조사관 제도의 시행에 있어 다수의 학교는 학교의 자율성에 근거한 제도 시행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타당한 요구로 판단된다.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발생 초기, 교사와 학교가 최선을 다한 중재와 지도 및 사안 접수 여부의 결정이라는 역할에서 제외된다면, 자칫 학생 돌봄 및 지도의 소홀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교육해야 할 교육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수 있으며, 동시에 학습 주체로서 인성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안 처리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위한 핵심 요소는 결국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부여된 상태에서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원화 된 시스템 매뉴얼로 보인다. 그리고 각 교육 주체의 매뉴얼에 따른 구체적이고 성실한 역할 수행이 있을 때, 사안 처리의 실제적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고용의 안정성 확보

조사관의 사기 진작이나 동기 부여를 위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업무의 확실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현재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는 급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봉사 차원의 부정기적 위촉'이라는 개념에서 과연 '일관된 성실성과 책무성 및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수한 전담 조사관의 안정된 확보와 조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사관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5) 적용 가능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유형(안) 제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 가능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유형(안)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였다.

〈유형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폭력 피해·가해 학생 측이 모두 요구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

이 유형은 전담 조사관이 직접 양측의 의사를 모두 확인한다는 전제하에 의미가 있음. 만약 양측에서의 동의 여부를 교사가 확인하게 된다면 이 유형은 의미가 적을 수 있음

- **장점**
  - 관련 학생 양측으로부터의 불만이 최소화됨
  -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도 조사로 인한 불만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음
  - 관련 교원의 업무가 경감
- **단점**
  - 한쪽에서 거부한다면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전담 조사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양측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냐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적 역량에 의존하게 될 수 있음

〈유형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폭력 피해·가해 학생 측 중에서 어느 한쪽에서 희망하거나 학교 측의 제안에 양측 중 어느 한쪽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

이 유형은 전담조사관이 양측의 의사를 모두 확인한다는 전제하에 의미가 있음. 만약 양측에서의 동의 여부를 교사가 확인하게 된다면 이 유형은 의미가 적음

- **장점**
  -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 경우가 높아질 것이기에 이에 따른 관련 교원의 업무가 경감됨
  - 조사의 신속성이 기대됨

ㅇ **단점**

- 동의하지 않은 측에서의 불만 제기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승복 거부가 가능함
- 어느 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학교 측에서 조사해야 하기에 조사 기간이 길어짐
-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도 조사로 인한 불만을 받을 가능성 있음
- 양측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냐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적 역량에 의존하게 될 수 있음

〈유형 3〉 학교 측에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전담 기구에서 할지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의뢰할지 결정

ㅇ **장점**

- 이 유형의 경우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으로도 가능
- 현행 법률(학교폭력 사안은 전담 기구에서 조사하도록 함)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높고, 설문 등에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음
-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 판단이 최대한 존중되기에 학교폭력 사안 전담조사관제의 획일적 적용에 대한 교육청 또는 학교의 불만이 해소됨
- 지역별·학교별·사안별 상황의 차이점이 고려됨
- 조사 → 보고 → 학교장 자체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지역협의회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처리가 신속 정확히 진행될 수 있음

ㅇ **단점**

- 학교 측이 자체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전담 기구에서의 심의 등 시간과 수고로움이 증가될 수 있음
- 조사와 관련한 학교 측의 부담이 감소하지 않음
- 교육감 소속 학교를 달리하는 학교 학생 간 발생한 폭력에 대해 교육감 관할 교육청 간 전담조사관 도입 여부에 따라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음

〈유형 4〉 모든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

○ **장점**

- 전국 모든 지역 및 학교들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인한 지역별 학교별 형평 유지

○ **단점**

- 교육청별·지역별·학교별·사안별 상황의 차이점이 무시됨으로 인한 교육청·학교들의 반발이 예상됨.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의무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소극적 또는 거부적으로 접근할 경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학교 폭력 발생 시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가피해자 조치 심의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어 일부 학교 또는 교원은 학교폭력에 관심이 적어질 수 있는 반면 교육지원청 업무는 증대할 수 있음
- 경미한 사안까지 조사해야 하므로 지역 내 사안이 다수일 경우 사안 조사가 지체될 수 있음
- 전담조사관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조사관들의 불만과 다양한 요구가 증가될 가능성 있음
- 학생들(초등학교 저학년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의 외부 조사관에 대한 거부감 초래가 될 수 있음
- 현행 법상 전담기구에서 조사한다는 강행 규정이 완전히 무시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유형 5〉 모든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조사

ㅇ **장점**

-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들의 접근 역량이 제고될 수 있음
- 통상적 사안 조사를 따를 수 있음
- 절차의 단순화

ㅇ **단점**

- 조사로 인한 학교 측의 업무 부담 증가 및 민원 부담
- 교육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 크며, 학교 및 2024년도에 충실히 이행한 시·도교육청에서의 반발 가능성 있음

〈유형 6〉 성폭력(경찰 수사 시 제외),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 발생한 폭력 중 양측 학생 측과 학교 측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시

이 유형은 전담조사관이 양측의 의사를 모두 확인한다는 전제 하에 의미가 있음. 만약 양측에서의 동의 여부를 교사가 확인하게 된다면 이 유형은 의미가 적음

ㅇ **장점**

- 조사 결과의 공정성 및 정확성 유지
-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도 관련 학생들 조치 수위 등을 결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
- 성폭력 관련 사안 조사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담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음

ㅇ **단점**

- 관련 학생 양측의 제반 여건 파악 및 일정과 장소 조율 등으로 소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
- 사안의 제반 특성을 양측 학교가 파악해야 함

〈유형 7〉 전담조사관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ㅇ **장점**

- 시·도 지역별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 세부 사항을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음
- 전담조사관 신분 보호에 대해서도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맞게 적용

ㅇ **단점**

- 관련 학생의 소속 시·도교육청이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 여부 기준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 조사 곤란

⑹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및 보호방안 마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사안조사를 전담기구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반면에 현행법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실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이는 법률 제11조의2 제1호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판명된 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조사이지,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을 위한 조사라고 보기에는 갑론을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법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신분이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에, 일부에서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담조사관 대상 민·형사적 책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 현재는 대체로 전담조사관이 전직 교원 또는 경찰관으로 모두가 연금 수령자들이기에 관련 재직시의 관련 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촉되어 사안이 있을 때에만 부정기적으로 1회 또는 수 회 활동하기에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물론 해석상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음). 현재 학교안전지킴이, 학교 보안관도 기간제 성격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보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교육청으로부터 위촉되어 참여 횟수당 일정한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들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활동 중 개인적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담조사관이 조사 과정 등에서 학생 측으로부터 인권침해 등을 당했거나 법적으로 부당하게 피소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법적 조력(변호사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안전법) 기준에 부합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일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호.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제5호.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예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예시 개선안

현황 및 개선안
□ 현재는 봉사활동 성격의 1년 단위 위촉형태 ○개선안 : 학교폭력전담조사실무사화(특수고용직화) - 장점 : 신분 보장으로 인한 적극적, 책무성 제고 및 조사관의 심리적 위축 다소 해소 - 단점 : 전담조사자 수가 많은 교육청의 경우 적용하는데 한계가 클 것으로 예상,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는 유동적인데, 활동 건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신분이 되기에 관계자 간 또 다른 근로 분쟁의 가능성 높음.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클 것으로 보임 ※ 특수고용직화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미흡 및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 부재 ○개선안 : 전담조사관의 신분과 보호 근거 마련 ※ 붉은 색 부분은 필요하다면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는 내용임 - 예시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전담조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지정 ·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사건 조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나.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공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라.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② 전담조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사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담조사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 또는 기피 또는 회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사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 예시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2(교육감의 의무)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 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 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관계직원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도 포함된다.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 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조사관이 조사와 관련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 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조사관의 비위(폭언,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지정 · 운영)~~~(상기 예시와 동일)

□ 전담조사관에 대한 사도교육청 단위에서 상담 및 법률 지원 가능 명확화 필요
○ 개선안 : 전담조사관의 신분은 변화없이 법률서비스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하나 행정적 재정직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좋음.

□ 조사시 학부모 또는 교원의 동석 여부는 지역마다 다름
○ 개선안 : 교육부에서의 전국 동일화, 사도교육청별로 동일화, 교육지원청별 동일화, 학교별 선택, 사건 관련자별 선택, 관련 학생들이 선택 등 다양하나 모두 장단점이 상존함. 초등학교 저학년 및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 사건에만 동석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이견도 공존함. 이에 필요성 여부는 관련 학교에서 사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동석자는 교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학생 보호자나 변호인이 참석할 경우 조사에 부담 증가 및 조사자 대상 법적 문제화 가능성 배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전문조사실 전무
○ 개선안 : 조사에 대한 시비 차단 및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보호를 위해 전문조사실(녹화 가능) 설치
- 장점 :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나 관련 학생의 언행이 문제되었을 때 신속 명확하게 처리가 가능, 법적 문제 발생시 1차적으로는 해당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녹화본 제출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조사관의 스트레스 경감, 조사에 따른 조사관 대상 민사 또는 형사상 문제 제기가 감소할 수 있음. 조사 과정과

결과의 정리가 명확해짐.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녹화가 가능한 방송실이 구비되었을 것으로 추정
- 단점 : 새롭게 구비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공간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녹화를 위한 관련 교사의 대기, 조사자 및 피조사자 모두가 부담을 갖을 수도 있음

2024년 11월 4일에 발의된 정성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220520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선발하자는 취지이다.

표 Ⅳ-2. 정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220520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및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관계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⑦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6항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⑤ (생 략)	⑩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위촉·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의안에서는 특히 조사권한에 대해서는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다. 다만, 이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전담조사관의 역량강화가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격 요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조사자를 전직 교원 또는 경찰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령은 거의 대체로 60대 이상으로 피조사 학생들과는 연령적 차이가 매우 크기에 학생들 이해하는데 문화 등의 이격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전직 경찰관의 경우 개인차가 있겠으나, 교육 및 학생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직 교원이라도 조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전직 경찰관이라도 수사관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시골 지역의 경우 전직 교원 또는 경찰관 자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위 문제의 개선안으로 전담조사관제를 금년도와 같이 그대로 지속 유지한다면 조사자들에 대한 사전 연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자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전담조사관들의 고연령화 및 학생들 문화에 대한 이해에 한계 등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상대적 저연령대 전담조사관 선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대 또는 사범대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의 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원이 아닌 자(퇴직 후 2년 이내인 자 등), 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확대함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법제화된다면 법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자격을 공가공인 민간 자격증화(예: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증)”를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

2) 장기적인 대책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인 교육 현장의 안정적 교육 업무 구현, 교원 업무 경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하여 다음의 정책을 제언함

(1) 학교폭력 대응 다원화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에 대한 단일화된 접근을 지양하고, 학교폭력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한 ① 교사 자체 해결, ② 학교장 종결, ③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④ 경찰 조사의 네 단계로 세분화하고, 전담조사관은 세 번째 경우에만 투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네 단계 대응 방식의 적용 대상인 초·중·고를 다시 두 시기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초등 저학년

의사소통이나 공감, 갈등해결 등 관계 능력을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 시기로 자율적, 주체적 판단 능력이나 의지적 행위 결정 능력이 아직 결여하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폭력이 윤리적, 이성적 판단보다 본능에 기초한 반응에 따른 사소한 다툼이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접한 부도덕한, 아직 스스로 개념화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언어폭력이다. 또 많은 경우 폭력 주체와 객체가 혼재되어 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먼저 교사의 선에서 조율해주고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교사의 본질적 역할 가운데 ‘돌봄’의 영역 안에 사소한 갈등 해결을 통한 훈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24.06.20. 심의·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대로 교사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훈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공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교육부의 기준의 틀 안에서 학교 및 학부모의 합의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 시 체벌 기준을 포함한 교사의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교사는 해당 행위가 스스로

해결할 범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심한 경우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상의하여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응 방안에서의 핵심은 교원 역량 강화 및 학부모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 1~4학년의 경우, 성폭력이나 심각한 사안을 제외하곤 교사와 학교장 종결의 두 영역하에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접수 및 전담조사관 투입은 배제하도록 권고한다.

나. 초등 고학년 이상

초등 고학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폭력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도덕적 의식과 이성적 판단에 따른 의지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폭력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판단과 본인 의사에 따라 사안 접수가 가능한 시기로 보인다. 다만 이 시기 역시 경미한 사안은 교사의 훈계나 상담 또는 학교차원의 갈등해결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심각한 사안이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교육청(전담조사관 사안 조사)이나 경찰에 접수하도록 한다.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적 전환

현장 교사들과 전담조사관들의 의견 수렴에서 도출된 핵심 제언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정착 및 전담조사관의 고용 불안정 해소, 나아가 학교 내 사안 발생 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혼란을 최소화함은 물론 실효적 대처를 위하여, 현재의 비정기적 봉사직을 갈등 조정, 가·피해 학생 상담, 사안 파악, 조사 등 학교폭력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총괄 책임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가칭 '학교폭력전담 실무사'),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숫자를 정하고 근무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령 정비를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자격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퇴직자 중심 조사관들의 경우, 경험과 역량이 전문화될 즈음 고령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자 자격을 현재 교육대 또는 사범대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의 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원이 아닌 자(교사 준비 자, 퇴직 2년 이내인 자 등), 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확대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자격 시험'을 통한 공가공인 민간자격증화(예: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증)"를 제안한다.

'학교폭력전담 실무사'의 구체적 모델은 미국 뉴저지 주의 학교폭력방지 전문가(Anti-Bullying Specialist, ABS)다. 2011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 ABR)' 에 근거하여 각 학교의 교장이 학교폭력방지 전문가(이하 ABS)를 임명한다. ABS는 학교 직원 중 반폭력 전문가 교육을 받은 직원이 주로 담당하며, 학교 폭력 예방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ABS는 학생, 교직원, 부모가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제반 자료를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을 평가하고 정보 수집 및 학교 정책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결정한다. ABS는 학교 학교 폭력 방지 예방프로그램 감독은 물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상담과 지원, 그리고 교사, 교직원 및 관리자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주도, 학교 폭력 사건의 문서화 및 학교폭력예방법(ABR)의 지침에 따른 보고서의 주 정부 제출에 관여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진국 중 다수 국가가 대부분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대응의 중심이 학교라는 점, 또 사안 조사의 주체로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를 두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저지의 ABS는 이러한 타 선진국의 정책과 한국의 전담조사관 제도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도로 볼 수 있다. ABS처럼 '학교폭력전담 실무사'를 각 학교에 배치할 경우 긍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전담 실무사'는 책임교사와 달리 교과교육을 맡지 않고, 오로지 학폭관련 사안을 총체적 통합적,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기존의 책임교사는 학폭 관련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져, 교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

둘째, 학교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부터 갈등 조정 및 상담, 사안 조사 및 심의회 이첩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전문가가 담당함으로 안정된 교육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셋째, 학부모 민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니 동석이나 일정 조율 등 기존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사안 대응, 사안 종결까지 일원화된 통합 체계를 설계 구현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의 자율성이 회복될 수 있고, 일반 교사는 긍정적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섯째, 현재 전담조사관의 역량이나 고용불안정 그리고 고령의 문제가 해소된다.

일곱째, 전문 지식을 갖추고, 학생들과 라포(Rapport)가 형성된 전문가의 사안조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 학부모의 신뢰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를 토대로 ABS(Anti-Bullying Specialist) 같은 '학교폭력전담 실무사'를 배출할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담 실무사에 대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뉴저지의 경우 ABS(Anti-Bullying Specialist)에 대한 보호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ABS는 공식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명확히 정립된 법이나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 한 개인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1. 공무원에 대한 한정 면책 특권이 있으며 폭력 조사 및 개입 중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면 2. 주 법률에 따른 구체적 법적 보호를 받고, 법적 소송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 교육청이 3. 책임 보험에 가입해주고 또 법적 비용과 잠재적 손해 배상을 부담한다. 또 5.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고 6. 기밀성 및 학생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따를 경우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으며, 불법이나 비윤리성(예: 폭력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등)을 식별하는 경우, 7.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8. 법률 자문과 협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보호권이 '학교폭력전담 실무사'에게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생 인권 중심에서 상호권리 존중과 책임 이행으로의 전환

일반적으로 교육 3주체 및 교육 4주체를 말하며 교육 주체 또는 교육 1주체를 학생이라고 하나, 이는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없다.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교육의 컨트롤타워인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의 유기적 연결을 토대로 교사는 교육과 돌봄, 지도의 틀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한다. 수업(授業)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은 교육받는 '학습 주체'이지 교육하는 '교육 주체'가 아니다. 지성 및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주체로 인성 훈육을 포함한 양육을 담당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와의 협력체계를 형성하며, 자녀가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도록 가정에서 돌봐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교육의 주체이다. 이러한 융합적 연결망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체계의 본질상 교권의 정립이 중심축으로 세워져야 한다.

수직적 교육 구조의 폐해를 지적하고 수평적 교육 구조를 정립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의미 있는 변화였으나 서이초 사건의 경우처럼 교권 자체가 침해되며, 교사의 학생 지도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수직적 교육 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다, 그 순기능마저 상실하게 되었고, 수평적 구조를 강조하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위에 있는 '역 수직적 기형적 교육구조'가 형성되었다. 그 다양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교실 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적극적 지도 개입이 위축됨으로 사소한 사안조차 폭력 사안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인력 낭비, 업무 과중, 경비 지출 등 비효율성의 일반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 구조는 물론 현재의 일방적 학생 인권 중심적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사의 긍정적 지도권을 회복함은 물론, 학생의 인격 역시 존중되는, 즉 교육 주체들의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교사의 자율적 지도권과 책임은 물론, 학생의 인권과 의무를 동시에 명시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례안의 틀 안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의 지도 역할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할 때, 교원의 관점에서 그 역할이 업무 부담이 아닌 교육과 돌봄 및 지도의 분명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학생의 관점에서 그 역할을 교육지도 행위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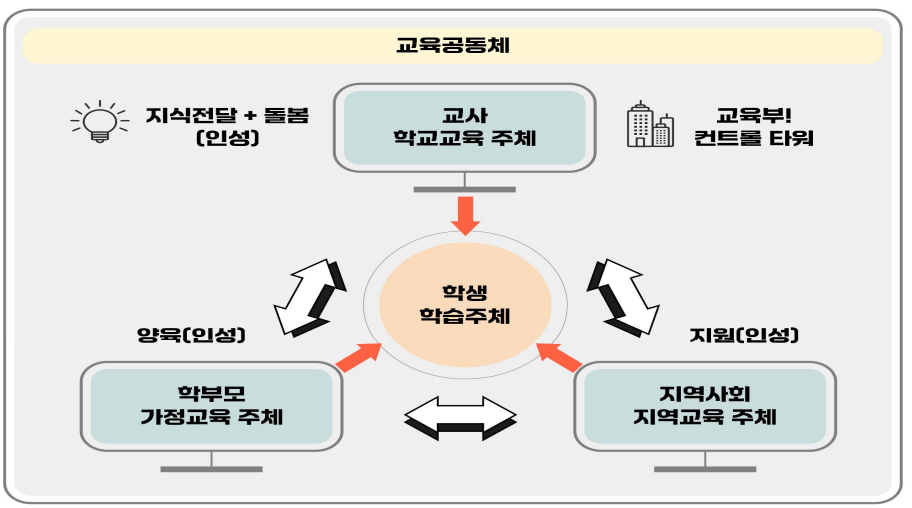

그림 Ⅳ-1. 교육공동체 모형

(4)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강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 공동체의 구현, 즉 학교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교육과 돌봄이 생산적으로 구현되고, 학습

주체로서 학생의 교육권이 미래지향적으로 실현되며,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행복한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의 궁극적 지향점은 결국,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응하는 학교 공동체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교육공동체이다. 학교폭력이 최소화되면 교원의 업무 부담 문제가 해소되고, 전담 조사관도 양질의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학부모의 민원 자체가 감소할 것이고, 교권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즉 예방훈련이다. 국회간담회를 인용하면 "학교폭력이란 해서도 안되고, 하는 걸 목격하고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당했을 때 가만히 있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 학생들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사안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지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하도록 훈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만 5세부터 '학교폭력' 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도 정확히 말하면 배변 훈련이 끝나는 시점부터 인성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공동체에 진입하는 유치원 때부터는 철저한 폭력 예방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나아가 생애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교육에 진입한 후엔 매년 학기 초에 학교 폭력의 정확한 규정 및 예방과 대응에 관한 강의를 SPO나 책임교사 또는 학교 전담조사관 및 관련 전문가의 주관하에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5) 인성교육의 강화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왕도는 '인성교육'이다. 최첨단의 교육 방법이나 교육 수단을 통해 최고의 학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한다 해도, 그 내면에 자신과 타인을 향한 존중,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존과 상생지향적 협력과 협동의 인성이 바탕이 되어있지 않다면, 폭력문화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은 낮다. I. Kant의 말을 적용하면, 지성이 없는 인성은 공허하고, 인성이 없는 지성은 맹목적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강화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즉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시하는 인성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나',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이다. '나'를 향한 성품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꾼 상태'이고, '나와 너'는 '타인 및 자연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성품'이

며 '우리'를 향한 성품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성품'이 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이 세 가지 성품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표 Ⅳ-3. 인성교육의 세 영역

人性(性品) 교육의 세 영역	1. 나	바르고 건전하게 가꾼 자신의 성품	자기관리 역량
	2. 나와 너	타인 및 자연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성품	관계 역량
	3.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성품	공동체 역량

학교폭력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이 '정규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을 강조'한 것은 분명 시의성 있는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정규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 시간' 등에 진행된다. 이를 정규교과에서 모두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흥미, 재미, 의미'를 지닌 실제적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원 연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대한 면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⑹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강화

학생들의 의식을 학교폭력 문화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소재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간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어울림마당은 현재 전국 126개소의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31p)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 활동 교육 지원은(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학생 1예술 활동 사업을 통해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확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대상 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지역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3). 이러한 계획의 실효적 구현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정부의 다각도의 노력도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학교와 연계한 돌봄 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확대 추진(관계부처합동, 2023)도 창의적 발상으로 보인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청소년 활동에 필히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독서문화 활동이다. 독서는 간접적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문화체험활동이다. 독서를 통해 청소년은 '나'와 '인간', '인간관계와 사회성' 그리고 '세상'을 배운다. 무엇보다 독서야말로 교과교육과 각종 체험활동을 실질적으로 의미화 해주는 교육의 토대이며 기둥이다. 하지만 현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독서 역량 함양을 위한 건실한 체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고등학생의 경우 2~3학년의 일반선택 교과안에 독서 과목이 있다. 하지만 독서는 기초소양이다. 따라서 고1부터 공통과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도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25년부터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독서는 선택과목이 되고 따라서 문과 학생도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이런 소모적인 흐름을 지양하고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독서는 간접 경험의 근원이며 자기관리와 사회성 및 관계성 함양의 토대다. 따라서 독서를 자유학기제의 영역 중 진로 탐색의 하위영역 정도로 분류한 것을 지양하고, 자유학기제와 별도로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독서교육과 생산적인 독서문화 및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나 에듀테크 진흥을 추진하더라도, 사실 그럴수록 더욱 독서교육에 대한 실효적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NRC 국가의제연구단, 2024).

(7)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

청소년이 폭력 조장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핵가족이나 맞벌이 부부의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특히 권위주의적이거나 방임적인 부모들 아래서 자란 청소년들은 폭력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가 어린 나이부터 자녀의 인성, 특히 예의나 타인에 대한 존중 습관을 길러주어야 하고, 폭력

등 유해 문화의 온상인 스마트폰 이용을 적절히 관리하고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폭력 문화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자녀와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기능이 없는 피처폰을 사주거나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을 미루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은 자녀가 중학교 2학년(8학년)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서약하는 캠페인에 50개 주 약 2만 2,000명의 부모가 동참하였다.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서약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이용상의 모범을 보여 자녀가 부모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양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 방식이나 사용 시간제한, 이용 가능 콘텐츠, 가정에서 미디어 사용 규칙 등에 관해 대화함으로 공감을 이끈 후 통제조절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대화와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체험, 놀이, 체육활동이나 여행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녀를 향한 적극적 관심과 사랑, 이해가 중요하고, 교육적 의식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가 아기에게 배변 훈련을 시킬 때 우리는 아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규제라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규제가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배워야 할 때가 있고, 배운 것을 누릴 때가 있다.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이 받아야 할 교육은 수능 준비만이 아니다.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청소년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잘 양육하고자 한다면, 나아가 폭력 없는 공동체를 단순히 공허한 이념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정부, 학교와 가정 모두 청소년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을 것이다. 바른 행동과 바르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청소년이 분별하고, 진정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맹목적 자유가 아닌 자율에 기초하여 실현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면, 사회구조적 측면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청소년을 향한 기성세대의 관심이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남수 (2023).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여청수사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 구, 22**(2). 43-68.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2024). **2024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계획**. 강원: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2024).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계획.** 강원: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4).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안).** 경기: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2024). **2024 경남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계획.**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2024).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 **2024학년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 (2024).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계획(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김봉수, 추봉조 (201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제도의 개선방안 -대구, 경부지역 학교폭력예방업무 경찰의 델파이 면담 조사를 중점으로-. **한국공안 행정학보, 69**, 9-30.

김상곤, 배진형, 한정숙, 김희영 (2013).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 **학교사회복지, 25**, 333-364.

김주한 (2018 A).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7**(1), 27-54

김주한 (2018 C).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분석에 관한 질적연구. **범죄심리학회, 14**(2), 11-32.
김주한 (2024 B).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현장근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1).
김태훈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좋은교사 2024년 8월호 (통권 288호), 24 - 27.
김해련, 조영주, 이혜지, 강현민, 김현경, 윤은지, 김지영, 오은석 (2024). **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방법 및 전담조사관 제도 (CRM2024-35).**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대구광역시교육청 (2024).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계획(안).**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2024). **2024 학교폭력제로센터 계획(안).**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024). **2024학년도 학교폭력제로센터(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계획.** 대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024). **2024학년도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계획.** 대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교육청 (2024). **2024 부산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계획(안).**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2024). **2024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계획(안).**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024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계획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4). **2024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계획.**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상운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제언.** 좋은교사 2024년 8월호(통권 288호). 33 - 36.
신성자 (2014). 교사의 학교폭력개입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응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8,** 137-165.
양승미, 최승원 (2021).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14**(1), 171-199.
울산광역시교육청 (2024).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계획**.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윤진영, 김상욱 (2023).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경찰조사 방안 논의. **경찰학연구, 23**(1). 257 - 280.

이정우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장 영향과 새로운 활로.** 좋은교사 2024년 8월호(통권 288호). 28 - 32.

이충민, 김대권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23**(4), 187-20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2024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계획(안).**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2024년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계획.**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2024). **202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계획**.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2024). **2024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계획.**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4). **2024년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운영 계획.**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 **2024년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운영 계획**.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2024). **2024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안).**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2024). **2024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안).**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한성준 (2024).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좋은교사 2024년 8월호 (통권 288호). 37 - 43.

NRC 국가의제연구단 (2024). **2024 국가의제 종합연구: 청소년 진로 및 문화체험 활성화.**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Cerf, Christopher., Hespe, David., Gantwerk, Barbara., Martz, Susan., & Vermeire, Gary. (2011). *Guidance for Schools on Implementing the 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 (P.L.2010, c.122).*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인터넷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3.12.07.).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https://if-blog.tistory.com/14685

그리고 (2023.12.07.).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등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 발표.**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k06969/223285532527

박준이 (2023.12.07.). **교사들 학교폭력업무서 해당···전담조사관 2700명 배치.**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education/2023120617064462521

박효균 (2023.12.07.).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선생님이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학폭 사안조사 처리 제도 개선).**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hg1025/223285683317

백승아. [백전백승아(백승아TV)]. (2024.06.25.). **학폭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간담회[동영상].** 유튜브(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40dmGS-gMk4

좋은교사운동 보도자료 (2024.05.29.).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개 간담회 결과 안내. 좋은교사.**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598

윤근혁 (2024.04.23.). **퇴직경찰 학폭 조사관? 선진 7개국엔 이런 제도 없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3961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헌·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헌·오병돈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억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헌·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본호·이자경·서지형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하형석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최용환 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 김기헌·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옥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 ·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 황세영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나예인·이유진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 워 크 숍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강명령 이해하기 (24.8.29.)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 포 럼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24.4.24.)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 NYPI Bluenote 통계 〉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 협 력 진 (가나다 순) ◈

경 일 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고 영 규 (충추남한강초등학교 교사)
고 재 범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주무관)
공 승 규 (서울인왕중학교 교사)
구 연 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구 희 남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장학사)
권 혁 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길 경 섭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연구사)
김 경 희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김 광 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김 동 천 (김해삼성초등학교 교사)
김 민 경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김 여 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김 정 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장학사)
김 진 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김 태 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주무관)
김 학 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문　　진 (국사편찬위원회 장학관)
문 경 숙 (충남만리포중학교 교사)
박 교 선 (전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
박 기 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장학사)
박 대 광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 은 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박 민 규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박 서 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자 문 · 협 력 진 (계속) ◈

박 성 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박 정 선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장학사)
박 지 원 (김해여자중학교 교사)
박 진 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부 민 영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장학사)
손 하 진 (천안청당초등학교 교사)
신 건 철 (서울구로초등학교 교사)
신 창 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생활과 장학사)
염 수 용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오 정 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옥 명 석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 연 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유 천 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윤 미 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이 근 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이 상 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이 상 우 (경기오산금암초등학교 교사)
이 수 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전문상담사)
이 정 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임 동 현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
장 원 빈 (전 세종시 부스러기선교회상담센터 센터장)
정 민 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
정 익 수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장학사)
정 재 욱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정 호 성 (광주월계중학교 교사)
조 성 백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최 승 익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홍 순 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연구보고 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2024년 12월 24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